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계층을 지원하고자 7.8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안이 동일 연도에 네 번째로 제출되는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이며, 올해 제출된 추경안의 규모를 합산하면 62.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확대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제충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별로 4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3.8조원,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가 1.4조원,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이 0.4조원, 학부모를 위한 긴급돌봄이 2.2조원입니다. 한편,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5조원,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0.3조원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 수지는 118.6조원 적자로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1조원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846.9조원으로서 GDP대비 43.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재정건전성·경제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추경안 심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I. 추경안 개괄

① 개 요	1
1. 추경안의 구성	1
2. 추경안의 편성배경	3
3. 추경안의 편성·제출 연혁	5
② 재정총량	7
1. 규모 및 자원	7
2. 재정총량 변화	9
③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11
④ 경제여건	14

II. 총량분석

① 편성요건 분석	22
1. 추경안의 편성요건	22
2. 분석의견	23
② 자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27
1. 자원구조	27
2. 재정건전성 분석	30
③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38
1. 지원방식·절차 분석: 일부 사업의 경우 선지급·후정산 방식 고려 필요	38
2. 지원대상·기준 분석: 지원대상·기준의 형평성 중점 검토 필요	40

제2장 위원회별 분석

I. 정무위원회

- 1. 개 요 45
- 2. 사업별 분석 47
 - 가. 코로나19 특례보증에 대한 사후적 리스크 관리 노력 필요(금융위원회) 47

II. 기획재정위원회

- 1. 개 요 51
- 2. 사업별 분석 53
 - 가.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자료공개 필요 53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 개 요 57
- 2. 사업별 분석 59
 - 가. 통신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수립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9

IV. 행정안전위원회

- 1. 개 요 63
- 2. 사업별 분석 65
 - 가. 희망근로 지원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노력 및 지역별 배분기준·사업 차별성 명확화 필요(행정안전부) 65



CONTENTS

V.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개 요 71
- 2. 사업별 분석 74
 - 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 등 사업계획 보완 필요 · 74
 - 나.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84

VI. 보건복지위원회

- 1. 개 요 89
- 2. 사업별 분석 91
 - 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보건복지부) ... 91
 - 나.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차별화된 일자리 프로그램 마련 필요(보건복지부) 95

VII. 환경노동위원회

- 1. 개 요 98
- 2. 사업별 분석 101
 - 가. 지원금 지원의 형평성 및 적시 생계 지원 달성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계획 강구 필요 등(고용노동부) 101
 - 나. 저소득 미취업 청년 중심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고용노동부) 108
 - 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목표 인원 달성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고용노동부) · 112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1

개요

1. 추경안의 구성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 2020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7개 부처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한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업수를 최소화한 결과로 보인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개)

구분	회계기금명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증감 사업수	
				총계(지출)	총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3	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3	3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3	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신용보증기금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1	0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3	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1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	2
	기술보증기금			1	0
	고용보험기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3
합계				26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작성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참고로, 2020년도 제1회~제4회 추경안의 소관부처 및 총지출 기준 증액사업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20년도 제1회~제4회 추경안 소관 및 세부사업수 현황]

(단위: 조원, 개)

구분	총규모		소관 상임위원회수	소관 부처수	증액 세부사업수 (총지출 기준)
		세출증액규모			
제1회	11.7	8.5	7	8	42
제2회	7.6	7.6	1	1	1
제3회	35.3	23.9	16	28	299
제4회	7.8	7.8	7	7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추경안의 편성배경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¹⁾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

국내에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 이후 9월 13일 자정까지 237일간 확진자 22,285명, 사망자 363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내 최초 확진(2015년 5월 20일) 후 69일³⁾간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을 기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메르스”)의 피해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0년 3월 11일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는 등 피해규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메르스 피해 현황 비교]

구분	집계기간	확진자수	사망자수
코로나19	237일 (2020.1.20. ~ 9.13.)	22,285명	363명
메르스	69일 (2015.5.20. ~ 7.28.)	186명	38명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2020년 9월 14일 10시 접속 및 「2015 메르스 백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국내에서 코로나19는 한동안 신규 확진자수가 두자리를 유지하는 등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다, 8월 중순경 103명을 기록한 이후 9월 12일 자정 현재까지 약 한달 간 세자리를 유지하는 등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2)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0.9., p.1.

3) 메르스 사태는 2015년 12월 24일 0시에 공식 종결선언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는 정부의 “향후 조치 계획”이 발표된 2015년 7월 28일을 “사실상 유행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국내·외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당초 3/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가 일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내수 중심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⁴⁾. 이에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특히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정부는 전기 대비 소매판매 변동률이 2020년 4~6월 3달간 양(+)의 값을 보이다 7월부터 다시 △6.0%로서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 추경안의 편성·제출 연혁

정부는 2020년 총 4차례 추경안을 편성·제출하였는데, 이는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동일연도 내에 복수의 추경안이 편성·제출된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부가 4회의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1961년(59년 전)이며, 그 밖에 추경안이 4회를 초과하여 편성된 경우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7회) 1차례뿐이다⁵⁾.

[동일연도 내 2회 이상 추경안 제출 현황]

연간 제출횟수	현황	해당 연도
7회	총 1개 연도	1950년대: 1950
4회	총 2개 연도	1960년대: 1961 2020년대: 2020
3회	총 8개 연도	1940년대: 1949 1950년대: 1951, 1954 1960년대: 1962, 1963, 1965, 1969 1970년대: 1972)
2회	총 14개 연도	1950년대: 1952, 1953, 1955 1960년대: 1960, 1966, 1967, 1968 1970년대: 1977 1990년대: 1990, 1991, 1998, 1999 1900년대: 2001, 2003
계	총 25개 연도	-

주: 1) 1972년의 경우 10월 17일 국회가 해산되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정부(비상국무회의) 차원에서 검토·확정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 STATS)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이번 추경안은 다음연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편성·제출되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이렇듯 추경안이 다음연도 예산안 이후에 제출되면 해당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차년도 이후의 재정총량 전망에도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200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이 3차례가 있었다.

5) 다만, 1950년대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통계에 부정확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연도 본예산 제출 이후 추경안이 제출된 사례]

(단위: 조원)

구분	제출일	규모	주요내용
2005년	9.30 (예산안과 동시)	5.2	(추진배경) 경기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 결손 보전 및 법률 제정 등에 따른 의무적 지출 소요와 일부 긴급한 지출 소요 마련 (주요내용) ①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세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보전(4.2조원) ② 의무지출소요와 연내 집행이 시급한 지출소요 마련(0.9조원)
2003년 (제2회)	10.2	3.0	(추진배경)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소요 충당을 위한 재원 마련 (주요내용) ① 태풍「매미」피해복구를 위한 일반회계 세입보전(3조원)
2001년 (제2회)	10.23	1.9	(추진배경) SOC 등 건설투자, 수출중소기업 지원, 쌀값 안정 지원, 기타 테러 사태 관련 지원 등 (주요내용) ① SOC 등 건설투자(0.7조원) ② 수출중소기업 지원(0.3조원) ③ 쌀값안정지원(0.3조원) ④ 기타 테러사태 관련 지원 등(0.4조원)

자료: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1. 규모 및 재원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총 7.8조원으로서, 전액이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액 증액(이하 “세출증액”)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7.8조원의 규모는 2009년 이후 제출된 추경안의 다수가 10조원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도 제1회~제4회 추경안을 합산하면 그 규모는 62.4조원이고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제1회~제3회 추경예산과 제4회 추경안을 합산하면 그 규모는 66.8조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전까지 가장 큰 규모로 추경안이 편성되었던 2009년도(28.9조원)나 1998년도(26.0조원)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이다.

[2008~2020년간 추경안의 주요내용 및 규모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총 편성규모			국회확정
		세출증액	세입경정		
2008년		4.9	4.9	-	4.6
2009년		28.9	17.7	11.2	28.4
2013년		17.3	5.3	12.0	17.3
2015년		11.8	6.2	5.6	11.6
2016년		11.0	11.0 ¹⁾	-	11.0
2017년		11.2	11.2	-	11.0
2018년		3.9	3.9	-	3.8
2019년		6.7	6.7	-	5.8
2020년	제1회	11.7	8.5	3.2	11.7
	제2회	7.6	7.6	-	12.2
	제3회	35.3	23.9	11.4	35.1
	제4회	7.8	7.8	-	심의예정
	소계	62.4	47.8	14.6	-

주: 1) 2016년도 추경안의 세출증액분에는 국제상환지출 1.2조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정부는 7.8조원의 추경안 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채 추가 발행분 7.5조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인 중소기업진흥채권 추가발행분 0.3조원을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재원별 상세내역 및 합의 등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분석하였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증액	7.8	- 국채 추가발행	7.5
		- 중소기업진흥채권 추가발행	0.3
합 계	7.8	합 계	7.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재정총량 변화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반면, 총지출은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총 7.8조원 증가한 554.7조원으로 변경되었다.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p)

구 분		2019		2020					증 감 (B-A)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A)	4차추경안 (B)	
재 정 규 모	총수입 (증가율) ¹⁾	476.1	476.4	481.8	481.6	482.2	470.7	470.7	-
		-	-	(1.1)	(1.1)	(1.2)	(△1.1)	(△1.1)	-
	총지출 (증가율) ¹⁾	469.6	475.4	512.3	523.1	531.1	546.9	554.7	+7.8
		-	-	(7.8)	(10.0)	(11.7)	(16.5)	(18.1)	-
재 정 수 지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6.5	1.0	△30.5	△41.5	△48.9	△76.2	△84.0	△7.8
		(0.3)	(0.0)	(△1.5)	(△2.1)	(△2.5)	(△3.9)	(△4.4)	(△0.5)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7.6	△42.3	△71.5	△82.0	△89.4	△111.5	△118.6	△7.1
		(△1.9)	(△2.2)	(△3.5)	(△4.1)	(△4.5)	(△5.8)	(△6.1)	(△0.3)
국가채무 (GDP대비)		740.8	731.5	805.2	815.5	819.0	839.4	846.9	+7.5
		(37.1)	(37.2)	(39.8)	(41.2)	(41.4)	(43.5)	(43.9)	(+0.4)

주: 1)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84.0조원(GDP 대비 △4.4%) 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의 △76.2조원(GDP 대비 △3.9%) 보다 적자폭이 7.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¹⁾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18.6조원(GDP 대비 △6.1%)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의 △111.5조원(GDP 대비 △5.8%) 보다 적자폭이 7.1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확대규모(7.8조원)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확대규모(7.1조원)보다 0.7조원 큰 것은 이번 추경안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수지(고용보험기금수지)가 0.7조원 악화되기 때문이다²⁾.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마지막으로 **국가채무**는 올해말 기준 846.9조원(GDP 대비 43.9%)으로, 제3회 추경예산의 839.4조원(GDP 대비 43.5%) 보다 7.5조원(GDP 대비 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이후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중기전망 규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8항³⁾에 따라 2020~2024년 국가채무 규모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출하였다⁴⁾.

[추경안에 따른 중기 국가채무 전망 변화]

(단위: 조원,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A)	839.4	945.0	1,070.3	1,196.3	1,327.0
(GDP대비)	(43.5)	(46.7)	(50.9)	(54.6)	(58.3)
제4회 추경안(B)	846.9	952.5	1,077.8	1,203.8	1,334.5
(GDP대비)	(43.9)	(47.1)	(51.2)	(55.0)	(58.6)
수정규모(B-A)	+7.5	+7.5	+7.5	+7.5	+7.5
	(+0.4)	(+0.4)	(+0.4)	(+0.4)	(+0.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관리재정수지 변동분(△7.1조원) = 통합재정수지 변동분(△7.8조원)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변동분(△0.7조원)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국가채무 외에 총수입은 계획기간 동안 변동이 없으며, 총지출 및 재정수지는 2021년 이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 세부사업별 내역

총지출 기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총 6개 부처 18개 세부사업의 7조 8,443억 5,500만원으로 구성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세부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3차추경 ¹⁾	4차추경안	증감
기획재정부 (2)	일반회계 예비비	5,560,000	5,660,000	100,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	18,455,439	18,495,028	39,58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일반회계 정보격차해소지원(정보화)	60,607	989,515	928,908
행정안전부 (1)	일반회계 희망근로 지원사업	1,206,091	1,286,494	80,403
보건복지부 (3)	일반회계 긴급복지	418,317	769,219	350,902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1,053,904	2,117,377	1,063,473
	자활사업	580,754	609,477	28,723
고용노동부 (6)	일반회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64,198	266,679	102,48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0	56,250	56,25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70,000	1,126,011	556,011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장려금	184,715	199,965	15,250
	고용유지지원금	2,198,153	2,682,618	484,465
중소벤처 기업부 (5)	일반회계 기술보증기금출연	398,280	468,280	70,000
	신용보증기금출연	3,050,575	3,170,575	120,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성장지원	361,756	3,607,756	3,246,000
	소상공인재기지원	69,588	171,488	101,900
	중소기업창업 및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000,000	1,300,000	300,000
합계(18개 세부사업)		-	-	7,844,355

주: 1) 기금은 제4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회계·기금별 내역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지출 확대분 7.8조원(18개 세부사업)을 회계·기금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3.5조원(11개 세부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4.4조원(7개 세부사업)은 기금(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4개)에 편성되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 체계 및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수)		예산 (총지출)	주요 사업	내부거래·보전거래
예 산	일반회계 (11개)	3,457,151	·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1조 635억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정보화) 9,289억원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 · 긴급복지 3,509억원 · 신용보증기금출연 1,200억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25억원 · 목적예비비 1,000억원 · 희망근로지원사업 804억원 · 기술보증기금출연 700억원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3억원 · 자활사업 287억원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359억원 · 소진기금 전출 3조 3,479억원
	소 계 (11개)	3,457,151	-	-
기 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1개)	39,589	· 국고채 발행 7조 5,407억원 · 국고채이자상환 396억원	· 일반회계 예탁 6조 8,410억원 · 고보기금 예탁 6,997억원
	고용보험기금 (3개)	699,715	· 고용유지지원금 4,845억원 · 구직급여 2,000억원 · 고용안정장려금 153억원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37억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7억원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수)	예산 (총지출)	주요 사업	내부거래·보전거래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2개)	3,347,900	· 소상공인성장지원 3조 2,460억원 · 소상공인재기지원 1,019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개)	300,000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000억원	· 기타민간차입금 3,000억원
소 계 (7개)	4,387,204	-	-
합 계 (18개)	7,844,355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금년 8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올 하반기 중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강도 또한 기대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세계경제 여건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일부 선진국들에서 신규 확진자의 수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가 좀처럼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MF도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 전년대비 -3.0%에서 6월에는 -4.9%로 큰 폭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당초 -6.1%에서 -8.0%로 조정되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경제의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IMF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교역량이 전년대비 11.9%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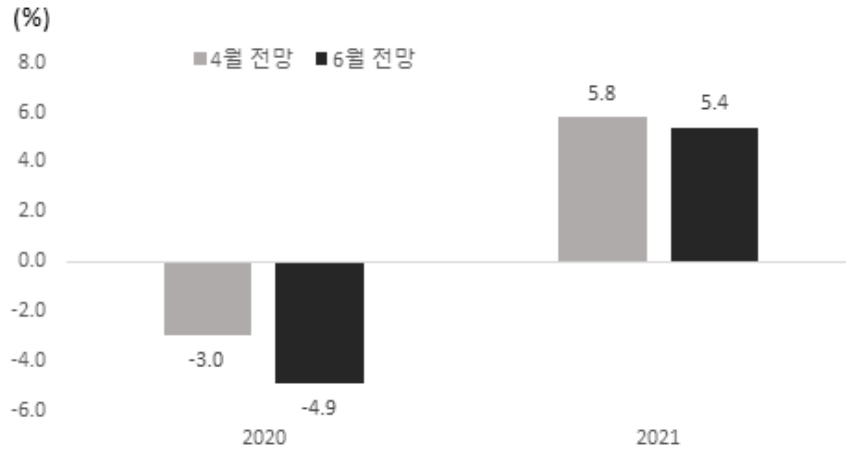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과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방역 능력, 백신 개발 시점, 방역을 위한 경제주체의 협조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코로나19가 야기하는 경제적 충격의 정도가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긴요한 국제적인 협력은 아직 미흡하다. 미국이 WHO(국제보건기구)를 탈퇴하고, 백신개발에 국제적 공조보다는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백신의 조기개발과 개발된 백신의 신속한 보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미·중 갈등의 격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원자재수요의 감소 등도 동반되고 있어 2021년에도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선 경제분석관(yssun@assembly.go.kr, 6788-4658)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 6788-4659)

오현희 경제분석관(hhoh@assembly.go.kr, 6788-4657)

[IMF의 2020~2021년 세계경제전망 하향 조정]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and June 2020.

나. 국내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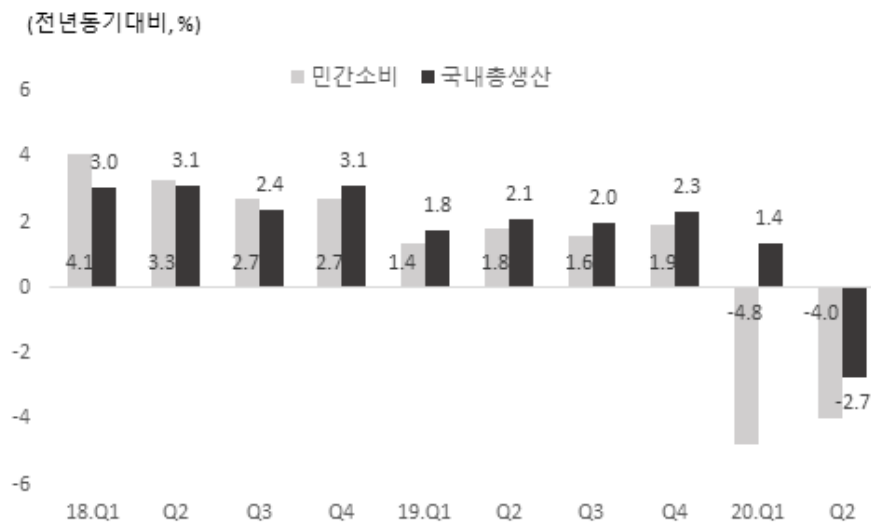
(1) 소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관련 서비스업과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는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크게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7.3p)과 3월(-18.5p) 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4월 중에도 7.6p 하락한 70.8을 기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2020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4분기 -4.8%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 소비는 운송업, 음식숙박업, 오락문화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4분기, 2/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6.1%, 7.4%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의 소비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6.7%, -7.8% 감소하였다. 반면 내구재의 경우 개

별소비세 인하¹⁾ 및 노후차 교체지원²⁾ 정책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정책³⁾에 따른 가전제품 판매 증가로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1%, 19.7% 증가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상반기 시행된 정책효과 축소, 8월 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 고용시장 악화 및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가계의 소득 여건 악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책효과가 축소된 7월 들어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6.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구재는 7월부터 개별 소비세 인하혜택이 축소되고 노후차 교체지원 종료에 따라 승용차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긴 장마에 따른 냉방용품 수요 감소로 가전제품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월대비 15.4% 감소하였다. 의복,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는 3개월 연속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5.6% 감소하였다.

1) 2020년 3~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7~12월까지 30% 인하

2)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폐차 후 신차구입시 1~6월 중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3)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가능

하반기 중 소비심리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70.8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황금연휴 기간의 소비증가, 정부의 정책대응,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5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체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말 현재 88.2⁴⁾로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악화가 하반기 민간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2) 수출

대외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된 2/4분기 중 전년동분기비 20.3%나 급감하였다.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3/4분기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7~8월 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8.5%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관일수를 배제한 일평균수출액의 경우 지난해(19.9억 달러)보다 낮은 17.8억 달러(1~8월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 금액을 단가와 물량 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수출단가 증가율은 반도체가격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10.2%)보다 감소율(-5.1%)이 축소되었으나, 수출물량 증가율은 지난해 소폭 증가에서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의 영향으로 -5.2%로 악화되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등 IT품목에 비해 석유제품, 자동차 등 비IT품목의 수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도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수출은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 수출지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수출이 증가 전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4일까지의 조사결과로 8월 중순 이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9월 중 소비심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3) 고용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최근 8월까지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동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0만명 이상 감소하고,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방역조치로 주요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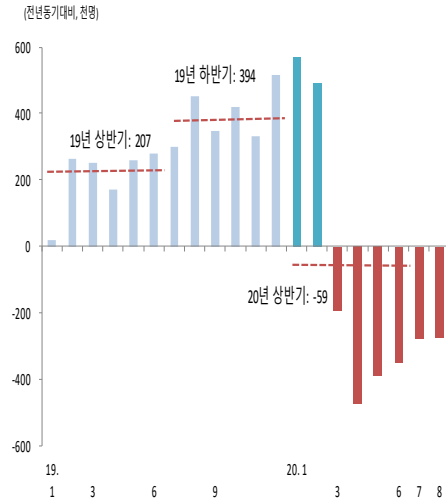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수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지난 4월 47.6만 명에서 완만히 줄어드는 양상이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는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8월 중순 이후 실시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반영되는 9월의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8월 중 전체 취업자수(2,708.5만명)는 전년동월대비 27.4만 명(-1.0%) 감소하여 전월(27.7만 명, -1.0%) 수준의 감소폭을 유지하였다. 산업별로는 여타 업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던 농림어업(-0.3만명)이 8월 들어 긴 장마의 영향 등으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되었고, 비농림어업에서는 제조업(-5.2만명), 건설업(-0.6만명), 서비스업(-21.3만명) 등에서 모두 전월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27.1만 명 감소하였다. 지난 3월 이후 8월 현재까지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4~5만 명대의 감소폭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가계의 경제활동 위축과 방한 외국인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⁵⁾이 집중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월평균 30만명 수준의 고용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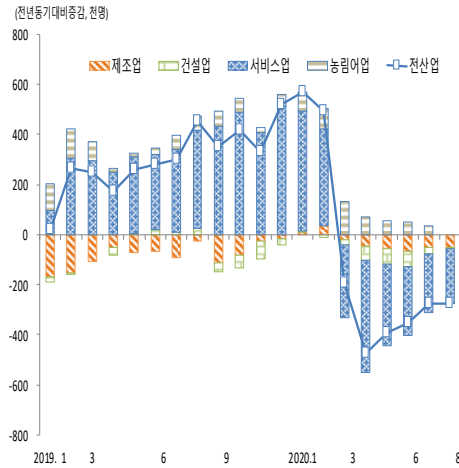
5) 방한 외국인 감소가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NABO 경제동향 & 이슈 5월호 이슈분석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국인 감소가 국내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참조

[월별 전체 취업자수 및 주요 업종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전체 취업자수 증감]



[주요 업종별 고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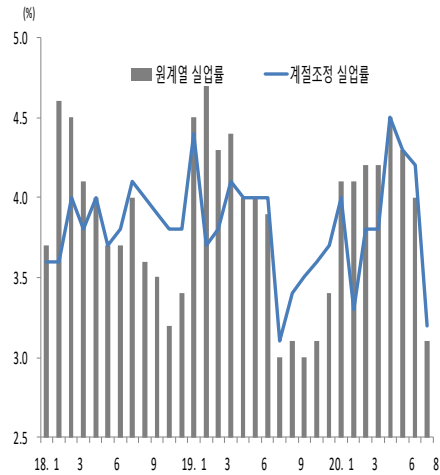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자 수도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지난 5월 각각 4.5%와 127.8만 명을 정점으로 8월 3.1%와 86.4만 명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여건의 악화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3월 이후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58.0만 명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자 비율)은 62.6%로 동기간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하였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3월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주요 연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줄고 가사, 취업준비, 구직단념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⁶⁾ 이에 따라 동기간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1%(남성 69.9%, 여성 50.6%)로 1.1%p(남성 1.0%p, 여성 1.2%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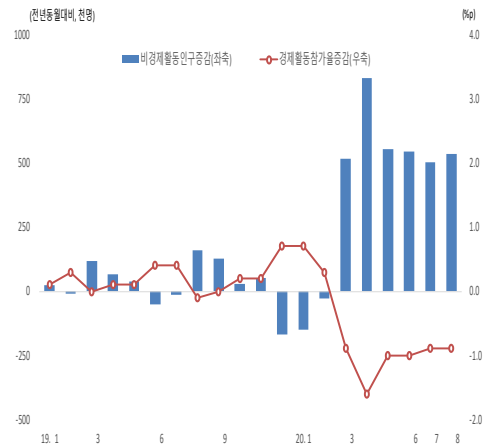
6) 8월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4만명(3.3%) 증가하였으며, 가사(23.8만명, 4.2%), 기타 중 '쉬었음'(29.0만명, 13.3%)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6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만명 증가하였다.

[실업률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실업률 추이]



[비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소비자물가

올해 1~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0.6%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공업제품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하였다. 그러나 2/4분기 들어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및 공급 측면의 물가 하락 요인이 작용하면서 -0.1%를 기록하였다. 특히 5월 중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물가의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고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9월(-0.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마이너스 물가(-0.3%)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국내 석유류제품 가격에 반영(-18.7%)되고 무상교육 확대로 고등학교 납입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⁷⁾하는 등 공공서비스 물가 내림

7) 고등학교 납입금 상승률(전년동기대비, %): ('20.4월)-64.0 → (5월)-66.2 → (6월)-68.0 → (7월)-67.9 → (8월)-67.9

폭이 더욱 확대된 데 기인한다. 최근 7~8월 중에도 여전히 0%대의 낮은 물가수준이 이어지고 있으나, 역대 최장기간 장마(54일)와 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국제유가 안정세로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공급측 요인을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인 근원물가는 4~5월 중 1999년 12월 이후 최저수준인 0.1% 상승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 하반기 중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수요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1

편성요건 분석

1. 추경안의 편성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¹⁾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재정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 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 분석의견

이번 추경안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요건 중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 요건과 관련성이 있다.

첫째, 이번 추경안을 큰 틀에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극복의 일환으로 본다면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2)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는 사회재난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을 규정하고 있다.³⁾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CoV)가 비말 등을 통해 사람 및 동물에 감염되어 발열·기침·호흡곤란·폐렴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감염병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피해는 「국가재정법」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음 “대규모” 요건을 만족하는지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코로나19는 최초 확진(2020년 1월 20일) 이후 9월 13일 자정까지 237일간 확진자 22,285명, 사망자 363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내 최초 확진(2015년 5월 20일) 후 69일⁴⁾간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을 기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메르스”)의 피해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3) 당초 「국가재정법」은 ‘재해’의 범위로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만을 의미하였으나 메르스 유행 등을 계기로 2015년 12월 15일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을 포괄하기 시작하였다.
- 4) 메르스 사태는 2015년 12월 24일 0시에 공식 종결선언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는 정부의 “향후 조치 계획”이 발표된 2015년 7월 28일을 “사실상 유행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메르스 피해 현황 비교]

구분	집계기간	확진자수	사망자수
코로나19	237일 (2020.1.20. ~ 9.13.)	22,285명	363명
메르스	69일 (2015.5.20. ~ 7.28.)	186명	38명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2020년 9월 14일 10시 접속 및 「2015 메르스 백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재해 관련 추경안의 선례로서 2002년·2003년·2006년 태풍 및 집중호우, 2015년 감염병·가뭄·장마, 2019년 미세먼지 및 산불과 관련한 추경안이 다수 편성되었고 무엇보다 2020년 이미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안이 3차례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요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재해대책 추경안 편성 연혁]

(단위: 조원)

연도	관련 재해	피해규모	추경안 규모	
			재해관련	
2020 (제3회)	- 코로나19	- 코로나19: 280명 사망('20.6.20.기준)	35.3	35.3
2020 (제2회)			7.6	7.6
2020 (제1회)			11.7	11.7
2019	- 미세먼지 - 강원산불	- 미세먼지: 특정 곤란 - 강원산불: 재산피해 1,291억원	6.7	2.2
2015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 가뭄 및 장마	- 메르스: 38명 사망	11.8	3.3
2006	- 7월 집중호우 - 태풍 에위니아	- 집중호우: 재산피해 18,344억원 - 에위니아: 재산피해 55억원	2.2	2.1
2003 (2회)	- 태풍 매미	- 매미: 재산피해 42,225억원	3.0	3.0
2002	- 태풍 루사	- 루사: 재산피해 51,479억원	4.1	3.6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안전부, 각 연도 재해연보·재난연감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이번 추경안의 주 목적을 코로나19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이라고 본다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은 재해와 달리 경기침체·대량실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최근 경기여건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의 경기침체 및 그에 따른 추경안 편성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질GDP성장률 감소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2020년 $\Delta 1.3\%$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2019년 대비 $\Delta 3.3\%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의 $\Delta 13.0\%p$,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Delta 5.0\%p$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그러나 ① 우리 경제구조의 성숙에 따라 성장률 자체가 점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10~20년 전의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② 2020년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으며⁵⁾, ③ 1996~2019년간 연평균 실질성장률 감소폭이 $\Delta 0.26\%p$ ⁶⁾임을 고려하면 $\Delta 3.3\%p$ 도 적은 규모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기침체기 실질성장률 감소폭 비교]

IMF 외환위기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2009년)	코로나19 (2020년)
$\Delta 13.0\%p$	$\Delta 5.0\%p$	$\Delta 3.3\%p$
(’96년 7.9% → ’98년 $\Delta 5.1\%$)	(’07년 5.8% → ’09년 0.8%)	(’19년 2.0% → ’20년 $\Delta 1.3\%$)

주: 2020년 실질성장률은 동년 6월 발표한 정부 전망치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계정:연간지표」, 2020.6.8. 23시 접속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8월 취업자 수 감소폭은 $\Delta 27.4$ 만명으로 1998년 3분기의 $\Delta 151.4$ 만명 보다는 적다. 그러나 ① 고용지표는 경기후행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고용여건의 추가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② 2017~2019년 8월의 전기 대비 취업자 수 변동폭 평균이 $+27.7$ 만명⁷⁾ 증가임을 고려하면 $\Delta 27.4$ 만명 감소는 양호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5) 실제로 IMF는 2020년 한국의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Delta 2.1\%$ 로 하향조정하였고(2020년 6월), KDIsmis $\Delta 1.1\%$ 로 하향조정하고 있다(2020년 9월).

6) 1996년 7.9% → 2019년 2.0%를 기준으로 연평균 감소폭을 산출

7) 통계청, 2017~2019년 「8월 고용동향」상 2019년 8월 $+45.2$ 만명(2,690.7만명 → 2,735.8만명), 2018년 8월 $+0.3$ 만명(2,690.4만명 → 2,690.7만명), 2017년 8월 $+37.6$ 만명(2,652.8만명 → 2,690.4만명)을 평균

[주요 경기침체기 취업자 수 감소폭 비교]

IMF 외환위기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2009년)	코로나19 (2020년)
△151.4만명 (‘97년 3분기 2,149.8만명 → ‘98년 3분기 1,998.4만명)	△2.9만명 (‘08년 3분기 2,395.8만명 → ‘09년 3분기 2,392.9만명)	△27.4만명 (‘19년 8월 2,735.8만명 → ‘20년 8월 2,708.5만명)

주: 1. IMF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가장 취업자수가 낮은 분기의 실적을 직전분기와 비교
2. 2020년의 경우 IMF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와 가급적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전년 4분기 대비 1분기 취업자수로 비교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취업자수(시도) 」, 2020.6.8. 23시 접속 및 고용노동부 「3월 고용동향」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1998~2019년간 편성된 총 21회의 추경안 중 「국가재정법」상 경기대응 목적이 포함된 경우는 17회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⁸⁾, 이는 그동안의 추경안 중에는 최근보다 경기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편성된 사례도 다수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추경안은 총괄적인 면에서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요건과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 요건 중 어느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8) 경기대응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4건의 사례는 2001년 제1회 추경안(건강보험 국고추가지원소요 충당 및 재해대책), 2002년 추경안(재해대책), 2003년 제2회 추경안(재해대책), 2006년 추경안(재해대책) 등이다.

1. 재원구조

이번 추경안은 국채 추가발행분 7.5조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인 중소기업진흥채권 추가발행분 0.3조원을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증액	7.8	- 국채 발행	7.5
		-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0.3
합 계	7.8	합 계	7.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국채발행

이번 추경안은 총규모 7.8조원의 96.2%에 해당하는 7.5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제1회 추경안의 10.3조원, 제3회 추경안의 23.8조원에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도 7.5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총 4차례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국채발행 규모는 41.6조원으로 증가하였다¹⁾.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1) 제1~3회 추경안을 국회 확정된 추경예산 기준으로 수정하면 36.8조원이다.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3.5조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되었다.

[2008~2020년 추경안 자원 중 국채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총규모	국채발행	
			비중
2008	4.9	-	-
2009	28.9	22.0	76.1
2013	17.3	15.8	91.3
2015	11.8	9.6	81.4
2016	11.0	-	-
2017	11.2	-	-
2018	3.9	-	-
2019	6.7	3.6	53.7
2020 제1회	11.7	10.3	88.0
2020 제2회	7.6	-	-
2020 제3회	35.3	23.8	67.4
2020 제4회	7.8	7.5	96.2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추경안의 국채발행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하 목차 2.의 “재정 건전성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서술한다.

나.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7.8조원 중 0.3조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조달된다.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증진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공단채이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추가발행되는 0.3조원의 증진채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출증액분 전액에 해당한다. 참고로 정부는 2018~2020년도 제4회 추경안까지 3년 연속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중진채의 추경안 재원 활용 연혁]

(단위: 억원)

구분	18년도 제1회 추경안	19년도 제1회 추경안	20년도 제1회 추경안	20년도 제4회 추경안
중진기금 증액 규모	8,393	7,090	4,000	3,000
중진채 활용 규모	4,500	5,080	4,000	3,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별·회차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자 등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은 중진채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담으로 수행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에서도 해당 사업의 증액을 위해 중진채를 추가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진채를 재원으로 수행중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용자사업은 원금 회수 실적이 전체 국가 회계·기금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용자사업에서 회수된 원금은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과목으로 계상되는데, 2019회계연도 전체 회계·기금의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징수결정액은 22.8조원이며 이 중 1.9조원이 미수납되어 평균 미수납률은 8.3%를 기록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과목은 징수결정액 3.3조원 중 1.0조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이 31.4%를 기록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미수납률]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전체 회계·기금 합계	22,845,090	1,893,033	8.3
중진기금	3,338,411	1,049,831	31.4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동 기금이 설치목적상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용자를 실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증진채를 연례적으로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 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자원금 회수 실적 제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재정건전성 분석

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총량 분석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4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제3회 추경(470.7조원)과 동일하고, 제4회 추경안의 총지출은 제3회 추경(546.9조원)에서 7.8조원이 증가한 554.7조원이다. 이에 따라 제4회 추경안의 관리재정수지는 제3회 추경 111.5조원의 적자(GDP 대비 △5.8%)에서 7.1조원 증가된 118.6조원 적자(GDP 대비 △6.1%)로 적자폭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변화(2019~2024년)]

(단위: 조원, %)

구 분		'19	'20	'21	'22	'23	'24
총수입	'19~'23계획	476.1 ¹⁾	481.8	505.6	529.2	554.5	
	(-) 국세수입감소	-	△0.9	△1.1	△0.1	△0.1	
	(+) 세외수입확대	-	+0.7	-	-	-	
	제1회 추경		481.6	504.4	529.1	554.3	
	(+) 세외수입확대	-	+0.5	-	-	-	
	제2회 추경		482.2	504.4	529.1	554.3	
	(-) 국세수입감소	-	△11.4	△11.8	△12.2	△12.8	
	제3회 추경	473.1 ³⁾	470.7	492.6	516.9	541.6	
제4회 추경(안) 및 '20~'24계획			470.7	483.0	505.4	527.8	552.2

구 분		'19	'20	'21	'22	'23	'24
총지출	'19~'23계획	469.6 ¹⁾	512.3	546.8	575.3	604.0	
	(+) 추경 사업		+10.9				
	제1회 추경		523.1	546.8	575.3	604.0	
	(+) 추경 사업		+8.0				
	제2회 추경		531.1	546.8	575.3	604.0	
	(+) 추경 사업		+15.8				
	제3회 추경	485.1 ³⁾	546.9	546.8	575.3	604.0	
	(+) 추경 사업		+7.8				
	제4회 추경(안) 및 '20~'24계획		554.7	555.8	589.1	615.7	640.3
관리재정 수지 (GDP대비, %)	'19~'23계획	△37.6 ¹⁾ (△1.9)	△71.5 (△3.5)	△81.8 (△3.9)	△85.6 (△3.9)	△90.2 (△3.9)	
	제1회 추경		△82.0 (△4.1)	△83.0 (△4.0)	△85.7 (△4.0)	△90.3 (△4.0)	
	제2회 추경		△89.4 (△4.5)	△83.0 (△4.0)	△85.7 (△4.0)	△90.3 (△4.0)	
	제3회 추경	△54.4 ³⁾ (△2.8)	△111.5 (△5.8)	△94.8 (△4.7)	△97.9 (△4.6)	△103.1 (△4.7)	
	제4회 추경(안) 및 '20~'24계획		△118.6 (△6.1)	△109.7 (△5.4)	△123.2 (△5.9)	△128.2 (△5.9)	△127.5 (△5.6)
국가채무 (GDP대비, %)	'19~'23계획	740.8 ¹⁾ (37.1)	805.2 (39.8)	887.6 (42.1)	970.6 (44.2)	1,061.3 (46.4)	
	제1회 추경	731.5 ²⁾ (37.2)	815.5 (41.2)	898.8 (43.6)	981.8 (45.8)	1,072.7 (48.0)	
	제2회 추경		819.0 (41.4)	902.3 (43.8)	985.3 (45.9)	1,076.2 (48.1)	
	제3회 추경	728.8 ³⁾ (38.0)	839.4 (43.5)	935.3 (46.2)	1,030.5 (48.9)	1,134.2 (51.7)	
	'20~'24계획	723.2 ⁴⁾ (37.7)	835.6 (43.3)	945.0 (46.7)	1,070.3 (50.9)	1,196.3 (54.6)	1,327.0 (58.3)
	제4회 추경(안)	723.2 (37.7)	846.9 (43.9)	952.5 (47.1)	1,077.8 (51.2)	1,203.8 (55.0)	1,334.5 (58.6)

주: 1) 2019년 본예산, 2) 2019년 제1회 추경, 3) 2019회계연도 잠정결산, 4) 2019회계연도 결산

1. 2020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점 3.8%, 제1회~제2회 추경 편성 시점 3.4%, 제3회 추경 및 제4회 추경안 편성 시점 0.6%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0. 9.

2019년 국가채무 규모는 잠정결산(728.8조원)에서 5.6조원(지방정부 순채무 결산 감소)이 감소되어 723.2조원이다. 5.6조원 감소분과 2020년 지방정부 순채무 변경분 1.8조원을 2020년 제3회 추경의 839.4조원에 적용하면 835.6조원으로 감소된다. 제4회 추경안의 국가채무는 여기서 7.5조원 증가한 843.2조원(GDP의 43.7%)이 될 것으로 보인다.³⁾ 국가채무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334.5조원(GDP의 58.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시점별 국가채무 전망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19년 국가채무	2020년 국가채무	2019 대비 2020 증가분
2019년 추경편성 시점	731.5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	731.5	805.5	74.0
2020년도 본예산 확정 시점	731.5	(-0.3) 805.2	73.7
2020년도 제1회 추경	731.5	(+10.3) 815.5	84.0
2020년도 제2회 추경	731.5	(+3.5) 819.0	87.5
2019회계연도 잠정결산	(-2.6) 728.8	(-2.6) 816.4	87.5
2020년도 제3회 추경	728.8	(+23.0) 839.4	110.6
2019회계연도 결산	(-5.6) 723.2	(-5.6) (+1.8) 835.6	112.4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편성 시점	723.2	(+7.5) 843.2	120.0

주: 소수점 이하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정부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서 국가채무를 제3회 추경 국가채무 규모인 839.4조원에서 7.5조원이 증가된 846.9조원으로 산출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산출방식은 2019회계연도 잠정결산 감소분을 반영하고 국가채무를 산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과 다른 방식이며, 2019년 국가채무 대비 123.7조원이 증가되는 수치가 되므로, 이는 과대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및 국채 발행한도는 2020년 본예산에서 131.6조원이었으며, 제1회 추경에 따라 10.4조원이 증액되어 142.0조원으로 증가되었다. 제2회 추경에서는 4.0조원이 증액된 146.0조원으로, 제3회 추경에서는 24.0조원이 증액된 170.0조원으로 증가되었다. 제4회 추경안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및 국채 발행한도는 7.5조원이 증가된 177.5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4회 추경안의 한도규모 177.5조원에서 차입금 한도 1.4조원을 제외한 176.1조원이 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이다. 이 중 51.3조원은 2020년에 도래하는 만기물을 상환하고 재발행(roll-over)하는 물량이고, 조기상환(buy-back)으로 불리는 시장조성물은 8.0조원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는 제3회 추경(97.7조원)에 비해 6.8조원이 상향된 104.5조원이 발행되고, 외평기금 등 기금 예수·예탁을 위한 국고채 발행은 제3회 추경(11.6조원)에 비해 0.7조원 증가된 12.3조원 규모로 발행될 계획이다.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및 국채 발행한도 변경]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0%로 OECD 평균(108.9%)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⁴⁾, 주요국의 일반정부 부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채무(D1) 및 일반정부 부채(D2) 비교]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랑스		105.3	106.4	109.3	110.6	110.0	109.9
독일		75.7	72.1	69.2	65.3	61.9	59.8
일본		234.5	230.5	235.6	233.5	235.9	237.4
한국 ¹⁾	D1	34.1	35.7	36.0	36.0	35.9	37.7
	D2	39.7	40.8	41.2	40.1	40.0	-
영국		91.6	92.6	92.0	90.9	90.2	89.8
미국		135.5	136.5	138.3	135.0	136.5	135.3
OECD평균 ²⁾		111.8	111.1	112.4	110.1	108.9	109.9

주: 1) 한국의 D1(국가채무)은 D2와의 비교를 위해 원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것임

2) OECD 평균은 「OECD Economic Outlook 107」(2020.6)의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자료임

1. 2019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자료는 2020년 12월 발표될 예정임. 2018년 D1과 D2의 차이는 GDP의 4.1%이며 2019년 국제비교 시 이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다 신속한 재정건전성 국제비교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시기에 D2를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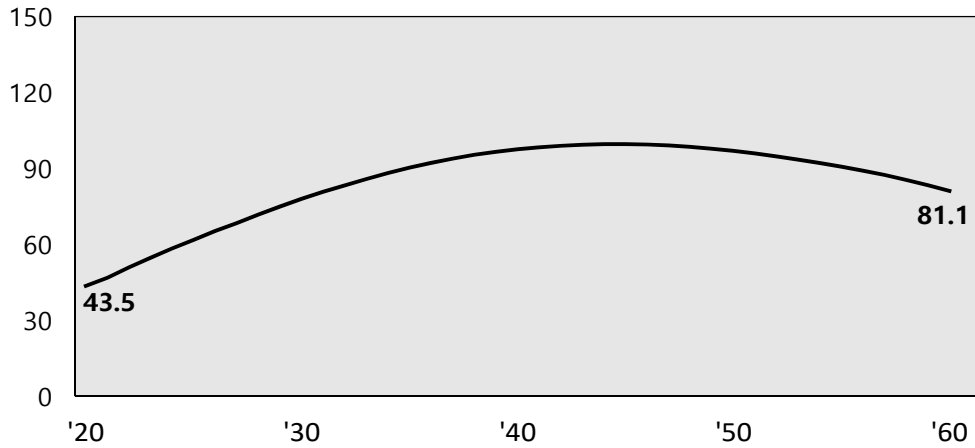
자료: OECD, National Account, Public Sector Debt, Consolidated, Nominal value <stats.oecd.org, 접속 2020.9.11.>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부는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여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보인다.

4) 우리나라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예·결산에 사용되는 재정지표는 국가채무(D1)이나 국제비교 시 활용되는 재정지표는 일반정부 부채(D2)이다. D1과 D2의 차이는 재정의 범위(비영리 공공기관 포함 여부), 회계방식(현금주의, 발생주의)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중 국가채무 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
(단위: GDP 대비 비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2020. 9.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국제분업 구조변화, 전염병·미세먼지 등 기후·환경·보건의 일시적 충격, 통일 등에 따라 미래에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 소요가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및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면,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책대-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영 중인 재정정책수단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지표의 목표 설정, 법적 근거, 제재조치, 회계기준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재정지표의 목표에 따라 재정준칙을 분류해보면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제20대 국회에서 국가채무 준칙과 재정수지 준칙 등이 규정되어 있는 ‘재정건전화법안(정부안과 송영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제출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안, 윤희숙 의원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정부도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총량 관리방안으로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대표적인 재정준칙]

국가	재정운용 목표	법적 기반	주요 내용
독일	채무비율	헌법 (2016)	구조적 재정적자(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부채의 신규발행을 GDP 대비 0.35% 이하로 허용
스위스	재정수지	헌법 (2003)	지출은 경기변동요인을 감안한 수입 전망치 내에서 달성
미국	Pay-go	법률 (2010)	의무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 입법시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다른 의무지출 감소나 세입 증가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 되도록 의무화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채무한도	법률 (2011)	법률에 의해 채무한도를 매년 통제 (Budget Control Act of 2011)
영국	채무비율 재정수지	법률 (2011)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 전년보다 감축 2017~2018회계연도 이내에 경기조정 재정수지 균형 달성
프랑스	재정수지	법률 (2012)	구조적 재정적자(GDP 대비) 0.5% 이하 유지
스웨덴	재정수지	법률 (2000, 2016)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GDP 대비) 2% (2000) → 0.33% (2016) 이상 유지
EU	채무비율 재정수지	마스트리히트 조약 (2012)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 이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 「주요국의 재정제도」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일시적인 경제 충격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경제·재정여건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준칙이 도입될 경우 국회에서 재정준칙 의무의 준수 여부, 재난 및 경제 충격 등의 시기에 재정준칙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지원방식·절차 분석: 일부 사업의 경우 선지급·후정산 방식 고려 필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한 피해지원 및 경기대응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정부는 이를 위하여 편성 과정에서 사업구성을 최소화하였고 집행 과정에서도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경기효과와 조속한 발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¹⁾.

이러한 경기효과와 조속한 발현을 위해서는 지급방식·절차를 효율화하여 정책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에 지급되었음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IT기술을 활용하여 신청·지급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4월 30일 추경안이 국회 의결된 후 4일 만인 5월 4일부터는 270만 저소득가구에, 13일 만인 5월 13일²⁾부터는 나머지 가구에 지급이 개시되었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대상 선별을 면밀하게 실시함에 따라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어려운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통해 정책시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³⁾ 보고서를 통해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피해기준) 방식을 비교하면서 후자의 단점인 지급의 신속성 저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시 독일에서도 활용한 방안인데, 구체적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운영비⁴⁾ 등을 지급하되 신청자 전원에게 대하여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후에 현금흐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검증하고 이를 정산·환수할 계획이다⁵⁾.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이와 관련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하였으며, “추석 전에 현금지원 사업 지급이 (상당부분) 착수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 기준

3)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p.67-87.

4)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자는 €9,000, 6~10인 사업자는 €15,000의 상한을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 이번 추경안 중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1차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번 추경안을 통해 2차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데, 정부는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별도의 검증 없이 50만원을 즉시 지급할 계획이나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및 소득감소 여부의 심사가 필요하여 11월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급시점이 기존 지원자에 비해 크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역사업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역사업으로서 정부는 기존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자체 선별·안내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9월말까지 상당부분의 집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더라도 대상자 선별에 일정 시간은 소요될 뿐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시스템 마련, 심사인력 채용·교육 등의 사전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안 중 대상자의 개별심사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대상자의 신청 등에 따라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하면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동시에, 선별기준 충족여부에 대해서도 사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

5) 그 밖에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 250만명에 대해서 각각 2,000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후, 3년여간 회계감사원(GAO) 감사 등을 통해 수십만건의 허위신청을 적발하여 이를 환수한 바 있다.

6) 한편, 대규모 신청에 따라 선지급 재원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우선 일부 금액만을 선지급한 후 나머지는 사후 요건심사를 거쳐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지원대상·기준 분석: 지원대상·기준의 형평성 중점 검토 필요

다음으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단위로 선별기준상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내역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고위험시설 12종⁷⁾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2종의 시설은 나머지 10종과 달리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집합금지업종’에서 제외되어 합리적 차별사유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매출이 감소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규창업하였거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은 별도로 매출감소를 증빙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빙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⁸⁾.

다음 ② 고용노동부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역사업으로서, 대상자의 적극적 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⁹⁾이나 취업성공패키지¹⁰⁾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신규로 참여할 미취업 청년 중 대상

7)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규제에 대한 지원 문제, 슬라이딩 구간 미비에 따른 소득역전 또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분석 참고

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청년,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1단계)’,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구직지원프로그램과 외에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구직활동지원 목적의 유사한 사업¹¹⁾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참여하는 청년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업 외에도 이번 추경안에 지원의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세부사업별로 특히 지원대상·기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0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등 총 20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가 정부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제2장

위원회별 분석

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금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8,846억원 3,300만원, 3조 5,905억 8,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은 없다.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수입 및 총지출 산정에서 제외되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1,200억원을 전입 받고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정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본예산	2020 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A)	제4회(B)	(B-A)	(B-A)/A
금융위	총수입	384,633	384,633	884,633	884,633	0	0.0
	총지출	886,380	1,298,880	1,405,164 ¹⁾	3,590,588	0	0.0

주. 1) 제2회 추경의 총지출은 1,297,364백만원이나 예비비 편성을 통해 1,405,164백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변경되었고, 동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수입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변경된 수입과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1,200억원 증액되었다.

[금융위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주요 세입·수입 과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A)	제4회(B)	(B-A)	(B-A)/A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91-911)	210,000	612,175	612,175	314,655	326,655	12,000	3.8

주: 1) '일반회계전입금'의 제3회 추경금액은 제2회 추경 이후 목적예비비 편성에 따른 96,000백만원 출연금을 반영한 현재회계 금액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이 1,200억원 증가됨에 따라 동 사업 역시 증가되었다.

[금융위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세출·지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A)	제4회(B)	(B-A)	(B-A)/A
신용보증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9702-971)	262,047	309,222	309,222	540,247	552,247	12,000	2.2

주: 1)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의 제3회 추경금액은 사업비로 60,375백만원 이·전용한 내역을 반영한 현재회계 금액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가. 코로나19 특례보증에 대한 사후적 리스크 관리 노력 필요(금융위원회)

(1) 현 황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 과목¹⁾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통한 출연금 수입으로 당초 2,100억원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으로 4,021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6,121억 7,5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목적 예비비 편성으로 960억원이 추가적으로 출연되었으며, 제3회 추경으로 2조 4,384억원이 증액되어 현재 수입 계획액은 3조 1,465억 7,500만원이다.

이번 제4회 추경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출연금이 1,200억원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수입도 현 계획액 3조 1,465억 7,500만원에서 1,200억원 증액된 3조 2,665억 7,500만원이 계획되었고, 이와 같은 수입증가에 따라 지출사업인 통화금융기관예치금²⁾ 운용규모 역시 1,200억원 증액되었다.

[일반회계전입금 2020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수정	2020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151,000	210,000	3,146,575	3,266,575	120,000	3.8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492,897	2,627,047	5,407,247	5,527,247	120,000	2.2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출연금의 통화금융기관 예치는 기본재산 확충에 활용되고 변경된 계획에 따라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부실액이 증가하면 대위변제사업비 집행액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대위변제사업비를 증액하여 운용한다.

1) 코드: 신용보증기금 91-911

2) 코드: 신용보증기금 9702-971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1,200억원이 증액된 것은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동 특례보증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7,000억원 규모로 시작³⁾되었고, 이번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에서는 추가적으로 1.5조원의 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①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⁴⁾, ②여행·운송·숙박·공연 등 코로나19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 ③그 외 매출감소, 가동중단 등 보증상담·신용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등이다.

동 상품의 보증료율은 통상의 보증보다 △0.3%p 차감하고,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을 보증한도로 하며, 보증비율은 95%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의 내용]

- (보증료율) △0.3%p 차감 (최대 1%)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한도
- (보증비율) 일반보증 85% → 특례보증 95%
- 신속지원을 위해 심사절차, 전결권 완화

자료: 신용보증기금

(2) 분석의견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통상의 보증심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그로 인해 부실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경영컨설팅 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3)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실적(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단위: 억원, %)

구분	보증 총량한도	소진율	보증 지원현황(누적)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대구경북	3,000	97.0	799	2,126	2,615	2,837	2,895	2,910
기타지역	4,000	100.0	2,964	4,000	4,000	4,000	4,000	4,000

4)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규제 국가와의 교역 실적 보유 기업, 그 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통관 지연 등 작·간접 수출입 피해 확인 기업 등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상품은 신속히 피해기업에게 보증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통상적인 보증심사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승인의 결재 단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피해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은 영업점에서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절차 등을 거쳐 통상 1~2주가 소요되는데, 코로나19 특례보증의 경우 심사절차를 완화⁵⁾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신속한 보증지원에 중점을 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전적인 보증심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부실률이 높아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상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낮고, 보증비율이 높아 피보증기업에 유리한 측면⁶⁾이 있으나, 낮은 보증료율과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위험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특례보증보다 신용보증기금의 위험부담이 더 증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2020년 8월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는 9.5배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에 의해 2019년 보증공급액 49조보다 5조원 증가된 54조원을 공급할 계획⁷⁾으로, 2020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는 12.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통상 중소기업이 신보에 보증을 신청하면, 기존에 신보가 해당 중소기업에 보증한 채권까지 합산한 보증액을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하나, 코로나19 특례보증에서는 기존의 신보 보증액은 고려하지 않고 특례보증 신청액만을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하여 신속하게 보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0.3%p 낮고, 보증비율은 10% 높다.

7) 2020년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공급 계획액 및 보증공급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일반보증 공급 계획액(A)	2020년 8월말 기준 일반보증 공급액(B)	B/A*100
보증공급액	54	35.4	65.6

자료: 신용보증기금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 8월말 기준	2020년 12월말 기준	
					당초	변경
기본재산(A)	51,214	50,909	53,377	54,202	49,593	46,449
보증잔액(B)	508,463	505,317	522,161	515,571	543,502	574,500
보증배수(B/A)	9.9	9.9	9.8	9.5	11.0	12.4

주) 2020년 12월말 기준 예상치는 4차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한 것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시 보증심사 단계에서 리스크에 대한 심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⁸⁾ 등을 통해 보증지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역량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인 '경영지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286조 6,262억원 7,2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26조 4,503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395억원 8,900만원이 증액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0 본예산	2020 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A)	제4회안(B)	(B-A)	(B-A)/A
기획 총수입	298,218,502	298,086,406	298,180,977	286,626,272	286,626,272	-	-
재정부 총지출	23,390,693	24,045,113	23,518,564	26,310,711	26,450,300	139,589	0.5

주: 총수입·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되는 항목이 없으며, 세출사업 중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계 기준 5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및 기타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목적예비비 1,0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②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추가발행분의 이자비용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세부사업 359억 1,5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 세부사업 395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세출·지출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A)	제4회안(B)	(B-A)	(B-A)/A
일반 회계	예비비 (3069-300)	3,400,000	4,400,000	4,400,000	5,560,000	5,660,000	100,000	1.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711-871)	9,436,932	9,540,765	9,655,205	9,760,457	9,796,372	35,915	0.4
공공 자금 관리 기금	국고채이자상환 (1071-780)	18,905,575	18,559,995	18,335,040	18,455,439	18,495,028	39,589	0.2
	일반회계 예탁 (8520-851)	60,288,402	68,275,531	77,078,622	97,126,644	108,967,610	6,840,966	7.0
	기타기금 예탁 (9020-900)	59,175,907	61,798,562	58,961,682	63,066,191	63,765,906	699,715	1.1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가.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자료공개 필요

(1) 현 황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자금으로서, 헌법¹⁾ 및 「국가재정법」²⁾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과목이다. 이러한 예비비는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 예비비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³⁾ 세부사업은 일반회계의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총액을 편성하는 사업이다⁴⁾. 2020년 본예산은 3조 4,000억원, 제3회 추경예산은 5조 5,600억원이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변동 대응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안에는 1,000억원이 증액된 5조 6,600억원이 편성되었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3) 코드: 일반회계 3069-300

4)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 회계에 예비비(7033-300) 세부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다.

[예비비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추경	2020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A)	제4회 추경안(B)	(B-A)	(B-A)/A
예비비	3,000,000	3,400,000	4,400,000	4,400,000	5,560,000	5,660,000	100,000	1.8
일반예비비	1,2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	-
목적예비비	1,8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4,160,000	4,260,000	100,000	2.3

자료: 기획재정부

(2) 분석의견

2020년도 예비비 규모는 본예산 기준 3.4조원(일반예비비 1.4조원, 목적예비비 2.0조원)이었으나, 지난 1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재난대응 소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제1회 추경예산⁵⁾을 통해 목적예비비 1.0조원을 증액하였고, 다시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목적예비비 1.16조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번 제4회 추경안을 통해 0.1조원의 추가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증액규모에 대하여 “코로나19 및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등에 따른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타 긴급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소소요를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은 3개월 동안의 정확한 예비비 소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비비 배정·집행 세부내역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는 관련 자료의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10~12월간 목적예비비 집행소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목적예비비 배정·집행 세부내역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존 예비비 배정·집행 내역 각각의 규모 및 사유를 파악하여야, 그와 관련된 일반예산 추가 확보여부 및 하반기 소요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목적예비비 소요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외에 본예산 기준 1.4조원 규모인 일반예비비도 있으며 이 또한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 잔여규모 또한 10~12월간 목적예비비 소요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5) 3월 5일 국회 제출 후 3월 17일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헌법 제55조⁶⁾상 예비비의 지출을 차기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차년도 국회에 별도로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연도에는 배정·집행 내역의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부는 예비비를 증액하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경우에는 증액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연도 배정·집행실적을 충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비비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해당 예산이 집행과정에 기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사전 예측하기 어려운 집행소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밀성이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 등 별도의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편성과정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집행과정에서 일반예산 이상으로 내역 공개에 특례를 두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것이다⁷⁾. 다시 말해, 예비비는 편성과정이 아닌 집행과정, 특히 내역공개와 관련해서는 성격상 일반예산과 달리 취급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 배정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를 성격상 공개가 곤란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총 6회의 목적예비비 배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왔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 제55조 또한 문언상 예비비 지출을 차기국회의 승인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뿐이다. 이는 일반예산의 집행내역을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산제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일뿐 해당연도의 국회의 통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도 정부가 공개한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억원)
배정일	배정내역	배정규모
2.18.	방역대응체계 운영	42
	검역·진단 지원	203
	격리·치료 지원	313
	방역·홍보 지원	294
	지원·보상 등	163
	귀국 국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27
	소계	1,041
2.25.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교육부)	42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인사혁신처)	9
	소계	50
3. 3.	대구·경북(청도) 방역체계 구축 및 마스크 생산지원	339
	가정내 돌봄 부담 완화, 학교 안전 강화	432
	소계	771
3.10.	검역·검사비용	332
	격리·치료비	1,296
	방역물품 지원	382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	5,186
	방역대응체계 운영	63
	소계	7,259
3.31.	국회의원선거 방역대책 지원	176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 고용보조금 지원	16
	소계	191
5.1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45
	소계	45

자료: 정부 각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예산의 경우에도 국회 승인을 받은 후 집행단계에서는 국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경우에는 정부도 증액요구된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상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로서 해당 연도 집행실적 및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추경안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는 제도의 취지상 편성이 아닌 집행과정에서는 일반예산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는 제1회·제3회 추경안에 이어 올해에만 3번째로 예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상임위·예결위 등의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예비비 배정·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제한적인 방법으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8조 6,875억원 400만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총지출은 17조 6,596억원 9,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9,289억원 800만원이 증액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0 본예산	2020 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과학기술	총수입	8,687,504	8,687,504	8,687,504	8,687,504	8,687,504	0	0.0
정보통신부	총지출	16,306,874	16,309,024	16,288,117	16,730,782	17,659,600	928,908	5.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사업 중 총계 기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필요한 9,289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추경 (B)	(B-A)	(B-A)/A
일반회계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정보화) (1945-501)	10,290	10,290	10,290	60,607	989,515	928,908	1,532.7

주: 총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통신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수립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비대면(언택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으로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정보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본예산 및 제1~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9,28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사업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본예산	2020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정보화)	11,365	10,290	10,290	10,290	60,607	989,815	928,908	1532.7
비대면 (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0	0	0	0	0	928,908	928,908	순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상 본인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이용중인 국민이다.²⁾ 지원금액은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1개월분 통신비 중 2만원이 정액 지원되고, 지원시기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므로 요금이 청구되는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에 미달하는 국민에게는 통신사와 협력하여 이월 등을 통해 최대 2만원 정액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945-501

2) 다만,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본인명의로 명의변경 후에 통신비 감면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없이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자동 감면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통신비 감면에 수반되는 업무지원을 위하여 상담안내를 위한 콜센터 등을 포함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사업계획]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만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본인명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이용중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2만원 정액지원(1개월 원칙)
지원시기	· 원칙적으로 9월분 이동통신요금 감면 예정(10월 요금 청구서 반영)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에 미달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하여 다음달로 이월 등을 통해 최대 2만원 정액감면 추진
지원절차	· 본인명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별도 신청없이 9월분 요금청구내역에서 자동감면 · 신규가입 또는 명의이전 필요시: 특정일까지 신규가입·명의변경후 자동감면
예산내역	· 4,640만명 대상 1개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 9,279억 6,200만원 ·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 9억 4,6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성

(2) 분석의견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0년 9월 6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포함하기로 발표된 이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단시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구체적인 지원절차·방법 등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선 동 사업은 통신비 지원대상을 만 13세 이상 국민으로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용자로 설정하고 있다. 동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라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2020년 6월 기준 고객용 휴대전화 가입회선 수가 5,606만 6,169개로 국민 인구수를 초과하고 있어³⁾ 대다수 국민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신사가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통신요금을 선 감면 후 감면액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하고, 정부가 그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통신사와 정부의 제반 업무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다회선 이용자 지급방안 마련 및 검증작업⁴⁾,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에 대한 명의 변경 처리⁵⁾ 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통신 3사(SKT, KT, LG U+)를 제외한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통신사의 경우 통신 3사에 비하여 직원 수가 적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9월 분 이동통신비 지원이 기한 내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다회선 이용자 및 타인 명의 이용자 등 특이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이 면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해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다.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는 통신비 감면지원 안내 콜센터 운영(2개월간 상담원 44명 운영),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및 기타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6월말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2020.8.7

4) 정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요금 감면이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나 각기 다른 통신사에 가입 중인 다회선 가입자의 경우 어느 통신사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감면 여부에 대한 통신사 간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

5) 동 사업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하여야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노년층의 경우 부양자의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명의변경 신청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 관련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추경안
상담안내 지원 콜센터	상담원 44명×313만원×2개월	275.4
사무공간 임대·운영		130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다회선 가입자 확인 및 감면기준 작업 DB검증프로그램 구입 등	212.9
사업 지원인력 운영		109.4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 수용비		218.3
합계		94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는 업무계획 수립, 사무공간 임대, 콜센터 상담원 등 사업 지원 인력 채용 및 교육, DB 검증프로그램 구입 및 운용 등 사전준비를 위해 사업개시 전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 사업은 9월분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위해 집행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 동 센터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대상 검증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대국민 통신비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동 센터의 구축 및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IV

행정안전위원회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608억 800만원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총지출은 68조 1,196억원 9,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04억원이 증액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행정안전부	총수입	60,808	60,808	60,808	60,808	0	0
	총지출	55,547,062	56,223,340	68,381,599	68,039,294	68,119,697	80,403

주: 1) 총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8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1)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일반회계	희망근로 지원사업 (3131-302)	0	0	0	1,206,091	1,286,494	80,403	6.7
합 계		0	0	0	1,206,091	1,286,494	80,403	6.7

자료: 행정안전부

가. 희망근로 지원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노력 및 지역별 배분기준·사업 차별성 명확화 필요(행정안전부)

(1) 현 황

희망근로 지원사업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²⁾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내역사업인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에 예산액 1조 2,061억원이 순증된 사업이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 내역사업(이하 “지역일자리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804억원이 증액된 1조 2,864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본예산	2020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희망근로 지원사업	0	0	0	0	1,206,091	1,286,494	80,403	6.7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0	0	0	0	1,206,091	1,206,091	0	0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	0	0	0	0	0	80,403	80,403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131-302

2) 행정안전부는「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임. 동 지침의 취업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층(중위소득 65%, 1인 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⑫ 노숙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 내역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의 임금기준은 시간당 8,59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며, 1일 6시간(월 평균 26일) 근무를 기준³⁾으로 2개월 간 추진될 예정이다.

(2)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지역일자리 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일자리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계획한 30만 일자리의 충원이 계획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일자리의 추진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희망일자리사업은 30만 명을 대상으로 4개월 간⁴⁾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2,564억원으로 전체 예산 1조 2,060억원 대비 실집행률이 21.3%수준이며, 계획된 일자리의 충원율을 보면 모집·선발된 인원은 계획된 인원 약 9만여 명이 미달한 21만 78명이다(20.9.10기준).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집행현황(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예산액(국비)	실집행액	실집행률
1,206,091	256,404	21.3

자료: 행정안전부

3) 단, 사업시간, 일일 근로시간은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특성 별로 상이하게 설계할 수 있음.

4)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업기간 5개월을 기준으로 1조 5,07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4개월 기준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음.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현황(8월말 기준)]

(단위: 명)

지방자치단체명	계획인원	모집인원	지방자치단체명	계획인원	모집인원
서울특별시	52,978	34,211	경기도	78,807	42,711
부산광역시	20,338	19,992	강원도	9,461	5,498
대구광역시	16,685	16,363	충청북도	9,325	4,401
인천광역시	17,049	15,622	충청남도	7,098	5,919
광주광역시	8,416	8,416	전라북도	10,327	9,630
대전광역시	8,465	6,158	전라남도	10,037	7,763
울산광역시	6,378	5,416	경상북도	19,216	10,465
세종특별자치시	1,762	905	경상남도	19,581	14,250
제주특별자치도	4,463	2,358	합 계	300,386	210,078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실제 활동이 시작된 8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중에 있으므로 이후 집행률이 제고될 여지가 있으며, 추가선발을 통해 10월말까지는 30만 명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이 완료된 21만 명 중에서도 8월에 선발된 인원은 9월부터 근로활동을 시작하므로 계획대비 연내 근로일이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10월말까지 추가 선발될 9만 여 명은 실제 연내 가능한 근무기간이 최대 2개월에 불과하여(11월, 12월) 상당규모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4회 추경안으로 공급되는 지역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적기에 계획 인원을 모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이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도 근로사업 운영이 제약되어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도 계획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부활동 및 집합이 필요한 근로사업⁵⁾에 제약이 있어 별도의 근로활동 없이 재택근무,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한 사업설계를 갖는 지역 일자리 사업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자리 사업의 편성 목적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5) 학교생활 지원,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보조, 지역사회상품권 가맹점 홍보 및 모집활동 등

이외에도 일자리 인원수급이 계획에 미달되어 사업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선발요건을 반복적으로 완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취업취약계층의 긴급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2019년 희망근로사업 추진 당시 참여자 미달로 재공고를 한 바 있는데, 당시 행정안전부는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대상자에 포함되고, 실직자가 아니거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도 일정 비율 감점한 후 선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고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3회 추경예산을 통한 희망일자리사업의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일자리 사업의 ①적기 집행가능성 제고, ②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③정책취지에 부합하는 계층의 우선 선발이 가능하도록 지역일자리 공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지역별 배분기준 및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2018년과 2019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서만 추진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도 보조율 80%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당해연도 직접일자리 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 자활근로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도 모두 지방비로 총사업비의 10~2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금번 지역일자리 사업은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기존 국고보조 일자리 사업보다 동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며, 지자체 간 경쟁적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⁶⁾

현재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는 진행 중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 참여인원 2.4만 명은 사업 소요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산출된 인원이며, 행정안전부는 수요조사가 완료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별 배분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6) 정부 예산안 제출일 기준(2020.09.11.)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수요는 예측 불가능함.

그러나 전액 국비지원 일자리 보조사업은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비용우위에 있는 동 사업을 우선시하여 기존 일자리 사업의 집행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배분기준 설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일자리 사업의 추가소요와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희망일자리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지역일자리 사업을 신규내역 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지난 추경사업과 차별화된 수요로 방역활동 및 수해복구 분야의 인력소요를 제시하였으며, 금번에 선발할 인력을 해당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희망일자리 사업의 기본유형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공공시설물 소독 등을 포함하는 생활방역지원 사업유형과 재해예방·공공시설물 및 주변환경 정비 사업이 총 52,923개의 일자리 중 42,096개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희망일자리사업 10대 기본유형]

구 분	세부사업 내용(예시)
생활방역지원	교통시설, 어린이집, 공공청사 등 방역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회복지원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홍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농·어가 일손돕기,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산로변 체육시설물 정비지원, 벽화 유지보수 관리지원
문화·예술환경 개선	광고물·공공조형물 관리실태점검
긴급 공공업무 지원	코로나19관련 상담민원 안내 및 발열체크 등 지원
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배출단속 지원, 산업단지 내 공원가꾸기
재해예방	산불·풍수해 등 지역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청년 지원	청년관련정책 홍보 지원, 청년센터 운영 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인터넷 방역단, 미니태양광 비대면 안전점검원 운영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외에도 현재 희망일자리 사업의 추진에 있어 인근 지자체 간 운영형태로 인한 형평성 문제,⁷⁾ 일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⁸⁾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지침과 사업설계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후 매주 3일 근무, 2일 유급휴가 처리하는 반면, 일부는 재택근무 처리하여 간식비 외 지급, 일부는 사업 중지로 무급 대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매일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참여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8) 일부 지자체는 행정여력의 한계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시설물 방역이나 환경정비 사업에 투입된 인력이 주변에서 담소만 나누거나, 개인업무를 보는 등 참여자들의 근무태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5조 8,127억 5,2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고, 총지출은 25조 4,179억원 7,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조 8,379억원이 증액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중소벤처 기업부	총수입	5,812,752	5,812,752	5,812,752	5,812,752	5,812,752	0	0
	총지출	13,336,968	16,430,698	16,376,638	21,580,078	25,417,978	3,837,900	17.8

주: 1) 기금의 경우 각 추경예산의 국회 확정 시 확정된 수정계획을 의미하며, '제3회'란은 현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벤처기업의 긴급한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타민간차입금이 3,000억원 증액되었고, ②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경기침체 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700억원 증액되었으며, ③ 코로나19 재확산의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3조 3,479억원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주요 세입·수입 과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기타민간차입금 (82-824)	4,590,000	5,490,000	5,490,000	5,990,000	6,290,000	300,000	5.0
기술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91-911)	150,000	216,900	216,900	398,280	468,280	70,000	17.6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금 (91-911)	826,348	1,261,403	1,261,403	1,578,633	4,926,533	3,347,900	212.1
합 계		5,566,348	6,968,303	6,968,303	7,966,913	11,684,813	3,717,900	46.7

주: 1) 기금의 경우 각 추경예산의 국회 확정 시 확정된 수정계획을 의미하며, '제3회'란은 현재회계(자체 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7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조 3,47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② 중소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확산과 긴급한 경영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등 3개 사업에 4,9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세출·지출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 (B)	(B-A)	(B)/A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1231-881)	210,000	612,175	612,175	3,050,575	3,170,575	120,000	3.9
	기술보증기금출연 (1231-882)	150,000	216,900	216,900	398,280	468,280	70,000	17.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8420-882)	826,348	1,261,403	1,261,403	1,690,633	5,038,533	3,347,900	198.0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1261-302)	100,000	700,000	700,000	1,000,000	1,300,000	300,000	30.0
기술보증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1,152,651	1,219,551	1,219,551	1,399,751	1,469,751	70,000	5.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성장지원 (4131-317)	87,541	351,666	351,666	361,756	3,607,756	3,246,000	897.3
	소상공인재기지원 (4131-319)	44,188	60,588	60,588	69,588	171,488	101,900	146.4
합 계		1,186,348	2,090,478	2,090,478	5,139,488	8,677,388	3,537,900	68.8

주: 1) 기금의 경우 각 추경예산의 국회 확정 시 확정된 수정계획을 의미하며, '제3회'란은 현계획(자체 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 등 사업계획 보완 필요

(1) 현 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¹⁾은 2020년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이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3조 2,4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2020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소상공인성장지원	68,967	87,541	361,756	3,607,756	3,246,000	897.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0	0	0	3,246,000	3,246,000	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총 290만 7,000명에게 100~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원금 3조 2,180억원이 편성되었고, 전담센터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운영비 28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편성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산출근거	예산안
지원금	· (100~200만원)×290.7만 명	32,180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15만 명	3,000
영업제한업종	· 150만원×32.3만 명	4,840
일반업종	· 100만원×243.4만 명	24,340
운영비	· 전담센터 215억원, 인프라구축 등 65억원	2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유진 예산분석관(yji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의 내역사업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업종과 지역(전국 또는 수도권²⁾)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① 집합금지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종 중 노래연습장, PC방 등 10종(유흥주점, 콜라텍 제외)과 수도권 소재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구분하여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②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의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은 ‘영업제한업종’으로 구분하여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③ 그 밖에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100만원을 지급하되, 매출기준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지원내용]

구 분		업종유형	지역기준	매출기준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 업종	고위험시설 10종 ¹⁾	전국	없음	200만원
		10인 이상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영업제한 업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수도권	없음	150만원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전국	①매출감소 ②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주: 1) 고위험시설 12종 중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10종을 말함(유흥주점, 콜라텍 등 2종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강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2020년 9월 11일 기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이용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업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9.4.

(2) 분석의견

첫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업종유형이나 매출기준 등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면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고위험시설 12종을 지정하였는데, 이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2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업종은 물론이고 일반업종에서도 제외하여 전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집합금지대상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집합금지업종 비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집합금지업종
○ 고위험시설 12종 -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살내 스탠딩공연장, 살내잡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고위험시설 10종 -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지원제외
○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 좌동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어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할 때,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선정할 때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업종유형과 지역기준(전국, 수도권)을 적용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집합금지시설이나 영업제한시설을 추가하여 지정을 강화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공연장 등을 집합금지업종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에도 목욕탕·사우나·당구장·태권도 도장 등을 집합금지업종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의 매출기준 적용방식을 살펴보면,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는 매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하여 200만원, 150만원씩 지급하고,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매출기준을 적용하여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로서 매출이 감소한 자에 한정하여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매출기준에 따른 지원내용]

구 분		매출기준	지원금액	비고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	없음	200만원	매출감소 여부 관계없음 연매출규모 관계없음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①매출감소 ②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매출감소 확인되지 못하면 지급불가 연매출 4억원 초과 지급불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런데 이는 업종별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연매출규모나 자산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과정에서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연매출 4억원’이 초과하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았더라도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신규 창업자이거나 현금거래 위주로 거래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매출감소를 스스로 증빙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증빙자료의 제출이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은 긴급 피해지원이라는 추경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사업추진과정에서 단계별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사전 선별하는 방안(신속지급 방안)과 소상공인이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방안(확인지급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① 신속지급 방안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자료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정부에서 우선 선별한 후 본인에게 지원대상임을 안내하고, 본인이 온라인(별도 홈페이지 구축 예정)이나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카드 또는 계좌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② 확인지급 방안은 금년도 신규 창업자 등 행정정보를 통한 매출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우에 본인이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최대한 지원금 지급의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통해 9월 말까지 가급적 많은 지원금의 지급이 완료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지원절차]

구 분	소상공인	세부절차
신속지급	2020년 1월, 7월 부가세 신고 등을 한 소상공인	① 행정정보(국세청 부가세매출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선별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③ 본인이 온라인(별도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 통해 지급 신청 ④ 카드 또는 계좌로 자금 입금
확인지급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소상공인	①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별도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 통해 지급 신청 ②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심사 ③ 카드 또는 계좌로 자금 입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은 소상공인 총 290만 7,000명의 대규모 인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서 소상공인 현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목표대로 신속하게 현금 지급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아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 총 290만 7,000명 중에서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의 비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속지급 방안에서 대규모 행정정보의 종합처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제 현금 지급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특히 확인지급 절차도 있음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지원금 지급 접수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인력을 새로 선발·교육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지원금 신청·접수·심사 및 지급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야 한다³⁾. 이와 관련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이 없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전담센터의 설치와 심사인력의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집행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전담센터의 설치, 심사인력의 선발·교육, 전산시스템의 신규 구축 등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이번 9월 말까지 가급적 많은 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당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건수 대비 심사인력의 부족, 증빙서류 보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지원금 지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건, 천원)

신청건수	처리건수	지급액
1,763,555	910,693(51.6%)	871,323,049(58.1%)

주: 2020.7.2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감 기준, 잠정치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감, 176만명 신청」, 2020.7.21.

3) 심사인력의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운영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운영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예산안
운영비	· 전담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3,303명×월 236만원×2.75개월)	21,464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 인프라 구축	6,168
	- 업무공간 임차비 3,270백만원, 사무집기 임차비 595백만원	
	- 업무망 구축 15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개발·유지보수 1,700백만원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50백만원	368
	· 사업홍보 및 수용비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피해지원이라는 추경목적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는 한편, 사업추진과정에서 단계별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속지급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지급 방안’은 심사기준이나 절차의 간소화 등을 도입하는 경우 사후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지급 환수 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아직 신속지급 방안의 선별기준과 확인지급 방안의 심사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조속히 선별기준 또는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논의된 신속지급 방안의 선별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19년과 2020년 7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020년 상반기 매출액까지밖에는 알 수 없으므로, 2019년 연간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2020년 8월 매출액이 이전보다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에 검증함으로써 오지급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희망자금 선별기준 또는 심사기준 사례]

구 분	소상공인	선별기준 또는 심사기준
신속지급	2019년과 2020년 7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 2019년 연간 월평균매출액 대비 2020년 상반기 평균매출액 감소한 경우
확인지급	2020년 창업자	· 2020년 6월~7월 평균매출액 대비 8월 매출액 감소한 경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확인지급의 경우에도 지원의 신속성을 위하여 심사기준이나 절차의 간소화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 필요하며, 그 밖에 심사인력의 한계, 증빙자료의 부실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으로 정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지급이나 부정수급 환수 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업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 현 황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01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2020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소상공인재기지원	56,460	44,188	69,588 ¹⁾	171,488	101,900	14.6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	0	0	101,900	101,900	순증

주: 1) 소상공인재기지원의 내역사업인 점포철거지원 사업이 제1회 추경과 제3회 추경을 통해 총 254억원이 증액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다만,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상 사업영위한 자)으로서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며, 폐업 소상공인 총 2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19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편성내역]

- 폐업 소상공인 장려금=20만 명×50만원=1,000억원
- 운영비=19억원(인건비 4.5억원, 시스템 구축·운영 6.5억원, 클센터 운영·홍보 6.7억원, 임차료, 수용비 등 1.3억원)
- * 20만 명=2017년 폐업 소상공인 68만 여명×1/12×4개월-2.4만 명
(2.4만 명은 지원제외 대상, 기 창업, 지원중복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유진 예산분석관(yj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의 내역사업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 소정의 온오프라인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 -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소상공인정책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제외														
지원금액	·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기간	· 제4회 추경 국회 의결·확정 후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를 병행 <table><tr><td>사업공고</td><td>⇒</td><td>신청접수</td><td>⇒</td><td>심사·선정</td><td>⇒</td><td>보조금 지급</td></tr><tr><td>중기부/ 소진공</td><td></td><td>소상공인→ 소진공</td><td></td><td>소진공</td><td></td><td>소진공→ 소상공인</td></tr></table>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보조금 지급	중기부/ 소진공		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보조금 지급									
중기부/ 소진공		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분석의견

첫째,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간 형평성 및 직접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으로서 온·오프라인 관계 없이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이고, 지원인원은 20만 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이 8월 16일이기 때문에 이를 폐업 기준일로 설정하였으며, 2017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기업 수가 68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4개월 소상공인 폐업신고 추정치를 2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도별 소상공인 폐업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5	2016	2017
소상공인 폐업기업 수	628,024	613,959	685,943

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업종별 종사자수 기준을 적용하여 소상공인만 추출하였으며, 2020년 9월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는 2017년이 가장 최근 통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폐업 소상공인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폐업 소상공인 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동 사업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따른 폐업여부를 폐업신고 시기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만을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지원대상을 폐업 소상공인으로 정하면서 별다른 우선순위나 지원기간의 정함이 없이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한 폐업 소상공인을 선착순대로 지원한 후 사업을 종료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선정여부가 임의적인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영향과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동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시기, 우선순위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재기성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를 지원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로 인정되는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시간이 원칙적으로 1시간에 불과하며, 실제 취업·재창업 완료여부와는 관계없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과정의 부실 및 재기성공 효과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참고로, 같은 세부사업인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기교육과 재창업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기교육은 10시간, 재창업교육은 최대 6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재창업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수료 후 개인별 전담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기교육 및 재창업교육 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	재기교육	재창업교육
세부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	소상공인재기지원
지원목적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전환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
지원대상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단, 기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지 원, 5년을 초과한 경우 제외	업종전환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교육시간	10시간	최대 60시간
교육내용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커뮤니케이션 등 실습, 토론 지원	의식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별 전문교육, ※ 교육 수료 후 개인별 전담 멘토링
2020예산	232억원	75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동 사업과 유사하게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직장려수당 지급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되어 실시

되고 있으며, 취업을 완료하여야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 지급 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사업	· 소상공인재가지원		
지원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지급기준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분할 지급	1 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40만원
		2 차 · 취업완료 시	60만원
	일괄지급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취업완료 시	100만 원
2020예산	122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과 관련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이 내
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재기성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목적인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VI

보건복지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71조 6,076억 3,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다. 또한 총지출은 88조 5,891억 7,1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조 4,430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위원회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보건복지부	총수입	71,607,637	71,607,637	71,607,637	71,607,637	71,607,637	0	0
	총지출	82,526,913	86,194,453	86,165,063	87,146,073	88,589,171	1,443,098	1.7

주: 1) 기금의 경우 각 추경예산의 국회 확정 시 확정된 수정계획을 의미하며, '제3회'란은 현재회(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3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코로나19로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생 이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에 1조 634억 7,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② 코로나19 피해로 맞춤형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된 저소득 사각지대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에 3,509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③ 경제적 위기상황에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이상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287억 2,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일반회계	긴급복지 (1133-300)	165,628	365,628	365,628	418,317	769,219	350,902	83.9
	자활사업 (1137-300)	580,754	580,754	580,754	580,754	609,477	28,723	4.9
	아동양육 한시지원 (2529-310)	0	1,053,904	1,053,904	1,053,904	2,117,377	1,063,473	50.2
	합 계	746,382	2,000,286	2,000,286	2,052,975	3,496,073	1,443,098	70.3

주: 1) 기금의 경우 각 추경예산의 국회 확정 시 확정된 수정계획을 의미하며, '제3회'란은 현재회계(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긴급복지사업¹⁾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긴급복지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저소득 사각지대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업인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본예산은 1,656억 2,800만원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이 증가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52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509억 200만원이 증액된 7,692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긴급복지사업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본예산	2020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긴급복지	162,587	165,628	365,628	365,628	418,317	769,219	350,902	83.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	0	0	0	0	350,902	350,902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은 2020년도 제1회, 제3회 추경에 이어 제4회 추경안을 편성함으로써 3번의 추경이 편성되었다. 제1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청 증가가 예상되어 긴급복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억원이 증액되었고,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20.5.19~'20.5.27)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450억원이 추가 필요액으로 제출된 내용을 고려하여 추경에 긴급 생계지원 500억원과 긴급 생계지원 업무 증가에 따라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다.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133-300

제4회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혜택²⁾에서 제외된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³⁾, 재산 3~6억원 이하인 가구(약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100만원⁴⁾ 등을 지원하고(3,487억 4,700만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456명, 21억 5,500만원)을 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제4회 추경안 편성내역]

구분	편성내역
제3회 추경	[긴급 생계지원] 50,000백만원 - 29,915가구 × 717.5천원 × 3개월 × 77.65%(국고보조율) [한시 인력지원] 2,689백만원 - 보조인력(사회복지사) 5개월 인건비 + 사회보험료 · 인건비: 349명 × 시간당 단가 8,590원 × 5개월 × 77.65%(국고보조율)
제4회 추경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348,747백만원 - 546,130가구¹⁾ × 638.6천원 × 1회(전액 국비 지원) 1) 546,130가구 = 948,662가구* × 약 58%**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중소도시 기준) 이하 ** 2009년 한시생계보호 시행 당시 약 2개월간 신청률 수준 [한시 인력지원] 2,155백만원 - 보조인력(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간제근로자) 2개월 인건비 + 사회보험료 · 인건비: 456명 × 2,363천원 × 2개월(전액 국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 코로나19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2조원, 291만명을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 등임

3)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음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4)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임

(2) 분석의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 조기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4회 추경안에 포함된 제2차 재난지원금이 업종에 따라 지원하는 선별지급으로 시행되어 경제적 피해가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특히 이번 제4회 추경안에는 지원 대상의 기준 중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적용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은 대도시(1억 8,800만원 → 6억원 이하 가구), 중소도시(1억 1,800만원 →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 농어촌(1억 100만원 → 3억원 이하 가구)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완화하였다.

지난 4년간 긴급복지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7~2019년에는 100~200억원 정도의 추경을 통하여 평균 1,332억원을 집행하였으나 2020년 7월말 현재 2,527억원의 추경을 통하여 예산 4,187억원 중 1,790억원(실집행률 42.8%)이 집행되었다.

[2020년 긴급복지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예 산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B)
	본예산(A)	추경(B)	합계(A+B)		
2017	1,113	100	1,213	1,159	95.6
2018	1,113	(전용)	1,309	1,244	95.0
		170			
		(목적예비비)			
2019	1,422	204	1,626	1,593	98.0
2020.7.	1,656	2,527	4,183	1,790	42.8

주: 직접수행사업 이외 지방자치단체·민간경상보조, 출연사업 등도 실집행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1~7월 긴급복지 사업 유형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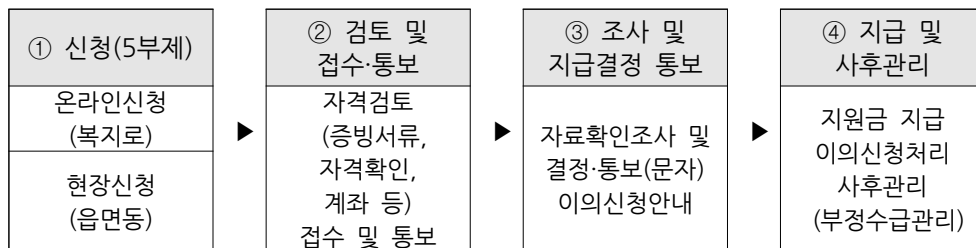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기타	합계
제1·3회 추경(A)	351,956	51,417	5,899	1,621	3,001	1,557	415,451
'20년 실집행현황 (1~7월)(B)	143,421	29,085	2,753	110	3,322	175	178,866
실집행률(B/A)	40.7	56.6	46.7	6.8	110.7	11.2	43.1

자료: 보건복지부

제4회 추경안의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중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이다.

2020년도 본예산 및 추경으로 편성되는 긴급복지 지원금의 대부분은 생계급여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따라서 기존 긴급복지 지원⁵⁾ 신청에 따른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과정보다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 타 법률 등에 따른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사업집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긴급지원 사업 집행절차(안)]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긴급 복지 지급에 대한 신청 접수,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팀(T/F)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담 팀 운영 외에도 급격한 신청 증가에 대비하여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이력을 신속히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복지 신청 시 소득·재산 기준 충족,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등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 긴급지원사업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지원요청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실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확인 후 만 1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함

나.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차별화된 일자리 프로그램 마련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자활사업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탈출을 촉진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2020년 본예산은 5,807억 5,400만원이나,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경험 축적과 생계유지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인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87억 2,300만원이 증액된 6,09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본예산	2020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자활사업	518,420	580,754	580,754	580,754	580,754	609,477	28,723	4.9
내일키움 일자리사업	0	0	0	0	0	28,723	28,723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은 기존 자활사업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중 65세 미만인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계획 인원 5,000명)에게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참여자의 급여는 주 40시간 기준 월 180만원을 2개월 동안 지급하고,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137-300

(2) 분석의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은 유사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된 일자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 참여율 제고 및 관련 직종 취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자활사업²⁾과는 지원 대상이 다르다.

현재 내일키움일자리사업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있다.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과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의 비교]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사업 목적	저소득층의 근로경험 축적과 생계유지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생계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5,000명	기준 중위소득 65%, 1인 가구 120% 이하 등 저소득층 2.4만명
일 평균근무시간 및 시급	1일 8시간, 시간당 8,590원	1일 6시간 ¹⁾ , 시간당 8,590원
장려금 지급여부	2개월 근무 시 20만원	없음
사업 기간	2개월	2개월
일자리 유형	사회적조직을 연계한 방역서비스업, 정부·지자체 연계사업, 청년·시니어 등 참여분야 등	생활방역지원, 수해복구 분야 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87억 2,300만원	804억 300만원

주: 1)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 범위내에서 상이하게 운용 가능함

자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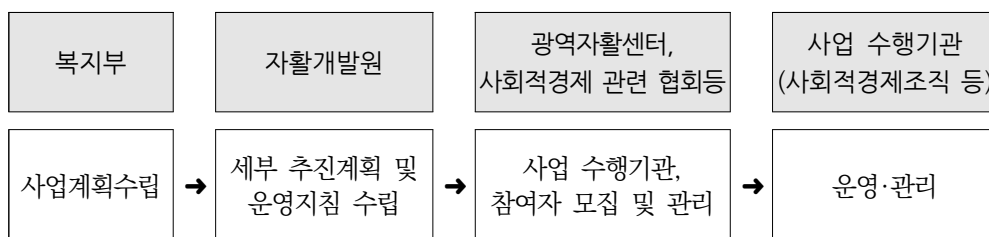
2) 자활사업은 2019년 기준 약 58,000명이 3개 유형(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일키움일자리사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사업 목적, 시급, 지원 기간 등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일자리 참여 결정에 있어서는 일자리의 유형(질)과 지속적인 고용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자활사업과 달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으로 인력 수요가 있는 사회적경제·돌봄영역(집수리, 가사·간병 등 돌봄 등)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참여자 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 교육 이수 등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일자리 급여 수준 등이 동 사업에서 제공하는 지급 단가인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높아 단 기간에 목표한 일자리 창출 및 참여자 모집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공모 절차 등의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제 일자리 참여 기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자활사업의 사례에서도 사업 계획 수립에서 일자리 공모, 참여자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내일채움일자리 사업 수행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유사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차별화된 일자리 프로그램 마련하고, 참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 사업이 지속적인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23조 9,716억원 9,100만원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또한 총지출은 40조 6,302억 5,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조 4,144억원 5,700만원이 증액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고용 노동부	총수입	23,969,799	23,969,799	23,969,799	23,971,691	23,971,691	0	0
	총지출	30,513,937	31,792,253	31,776,180	39,215,801	40,630,258	1,414,457	3.7

주: 1) 기금의 경우 각 추경예산의 국회 확정 시 확정된 수정계획을 의미하며, '제3회'란은 현재회(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변경된 수입과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예수금이 6,99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주요 수입과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
고용보험 기금	기금예수금 (94-943)	0	0	0	4,000,000	4,699,715	699,715	17.5
합 계		0	0	0	4,000,000	4,699,715	699,715	17.5

주: 1) 기금의 경우 각 추경예산의 국회 확정 시 확정된 수정계획을 의미하며, '제3회'란은 현재회계(자체변경 포함)를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8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1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5,560억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②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1,204억 8,1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③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 562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125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세출·지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0 본예산	2020 추경 ¹⁾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일반 회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234-301)	164,198	164,198	164,198	164,198	266,679	102,481	62.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45-300)	0	0	0	570,000	1,126,011	556,011	97.5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339-302)	0	0	0	0	56,250	56,250	순증
고용 보험 기금	고용유지지원금 (1045-350)	35,089	35,089	35,089	219,153	2,682,618	484,465	22.0
	구직급여 (1280-350)	9,515,779	9,515,779	9,515,779	129,529	131,059	200,000	1.5
	고용안정장려금 (1345-350)	151,192	187,649	187,649	184,715	199,965	15,250	8.3
	고보기금에서공자기금 (총괄계정)으로 예수이자상환 (9201-840)	0	0	0	21,000	24,674	3,674	17.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9710-972)	2,552,621	2,281,104	2,281,104	686,316	682,642	△3,674	△0.5
합 계		12,418,879	12,183,89	12,183,89	1,733,911	18,148,368	1,414,457	8.4

주: 1) 기금의 경우 각 추경예산의 국회 확정 시 확정된 수정계획을 의미하며, '제3회'란은 현계획
(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가. 지원금 지원의 형평성 및 적시 생계 지원 달성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계획 강구 필요 등(고용노동부)

(1) 현 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이 시작되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560억 1,100만원이 증액된 1조 1,26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²⁾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본예산	2020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0	0	0	0	570,000	1,126,011	556,011	97.5

주: 동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제4회 추경안 기준 2조 6,282억 700만원이나, 이 중 예비비 총액이 1조 3,396억 700만원이고, 이·전용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1,625억 8,900만원이며, 제3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5,700억원, 제4회 추경안을 통한 증액 계획 예산이 5,560억 1,100만원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 따른 2차 지원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³⁾·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50 ~ 150만원을 지원한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45-300

2) 동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제4회 추경안 기준 2조 6,282억 700만원이나, 이 중 예비비 총액이 1조 3,396억 700만원이고, 이·전용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1,625억 8,900만원이며, 제3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5,700억원, 제4회 추경안을 통한 증액 계획 예산이 5,560억 1,100만원이다.

3)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존 지원자와 신규 지원자로 나뉘는데, ① 기존 지원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⁴⁾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하고, ② 신규 신청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⁵⁾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한다. 기존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⁶⁾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또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2차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기존 지원자의 경우 소득요건 증명이 불필요하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①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임과 동시에, ② '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신규신청자의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8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2차 지원금의 소득요건은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1구간'과 유사한데,⁷⁾ 다만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신청인 개인 연소득 외에도 가구소득 또는 매출액도 소득요건에 포함되었고, 요구 소득 감소율이 25%인 1구간 외에 요구 소득 감소율이 50%인 2구간이 있었다. 그러나, 2차 지원금의 경우 소득 요건을 연소득 단일 기준으로, 요구되는 소득 감소율도 25% 이상으로 단일화하였다.

4)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록관리사, 복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5) 다만,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14개 업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6)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

7)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요건 및 소득감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의 소득요건(①~③ 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되, 소득 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 중 택1)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차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비교]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¹⁾
소득 요건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 ²⁾ (연매출 2억원) 이하 ② '20.3~4월 평균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50% 이상 감소 (*비교대상기간: '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 중 택1)	① '19년 연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 ② '20.8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비교대상기간: '19년 월평균, '20.6월 '20.7월 '19.8월 소득 중 택1)
지원 내용	총 150만원 지원	· 기존 지원자: 50만원 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일시 지원
지원 인원	지급결정인원 총 147.2만명(9.8. 기준) (특고·프리랜서 49.8만명, 영세자영업자 92.2만명, 무급휴직자 5.1만명)	목표지원인원 총 70만명 (기존 지원자 50만명, 신규 신청자 20만명)

주: 1)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무급휴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긴급복지(보건복지부)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2)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19년)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구간,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구간으로 분류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및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2020.9.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차 소득요건 및 소득감소요건]

구분	소득요건	소득감소요건 (무급휴직일수)
특고·프리랜서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영세자영업자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원 이하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무급휴직자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2020.6.1.을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는 10.12~23일(잠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받아 11월 내에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 분석의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조화가 가능한 선에서 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및 신규 신청자의 적시 생계 지원을 달성할 수 있는 집행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 계획상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원자(50만명)에 대하여는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추석 전에 별도 심사 없이⁸⁾ 지급을 완료 하고, 신규 신청자(20만명)에 대하여는 추경 통과 후 약 2주간 기간제 근로자(720명)인 심사인력을 선발·교육하고 지원금 신청·심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10.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별 지원시기 및 절차]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및 절차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완료
신규 신청자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內 지급(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2020.9.

이와 같은 방식은 목표 지원 인원 70만명 중 50만명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지원자는 '20.8월 대비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바 '20.3~4월에

8) 다만,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비해 현재 생계가 개선된 지원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지원자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전 심사를 배제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 사후 검증을 통해서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11월 중에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인바 현재 생계가 어려운 지원자에 대한 적시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더욱 신속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조화가 가능한 선에서 소득 지원의 형평성 및 적시 생계 지원을 달성할 수 있는 집행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⁹⁾

둘째, 지급 목표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함으로써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차 지원금 목표 신규 지원 인원을 20만명으로 설정하였다.¹⁰⁾ 그런데,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총 지원인원이 목표 지원인원을 크게 초과한 바 있다.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특고에 대한 예상 지원인원은 약 31~33만명이었는데, 1차 9.8. 기준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급 결정 인원 수는 49.8만명으로서 예상 대비 약 1.5배 이상의 인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지원인원도 예상 지원 인원을 크게 초과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 유형별 예상 및 지급 결정 인원]

구분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총계
예상 지원 인원	약 31~33만명	약 51~53만명	약 8~9만명	약 93만명
지급 결정 인원(9.8)	49.8만명	92.2만명	5.1만명	약 147.2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가령,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차후 소득 감소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고, 신규 지원자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심사 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목표 지원인원 20만명은 특고·프리랜서 총 규모 166만명(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소득분포가 전체가구 소득분포와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166\text{만명} \times 0.5(\text{가구중위소득 } 100\% \text{ 이하}) - 50\text{만명}(\text{기존 지원자})] \times 0.6(\text{경기도내 자영업자 실태설문조사 결과}) \approx 20\text{만명}$ 으로 산출하였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가 목표 지원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① 연소득 낮은 순, ② 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 소득감소규모 큰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급할 계획¹¹⁾인데,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확실적인 소득 증명 체계가 없이 다양한 증빙서류를 통해 과거 소득과 현재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인원이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신청자 중 일부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부지급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따른 2차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 목표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함으로써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전에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유사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2020년 3~4월 및 8~9월 각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차례 추경을 통해 편성된바, 향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① 현재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신규 사업에 비해 신속 집행이 용이한 점, ②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현재 진행중인 점¹²⁾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과 유사한 구조의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예측하기 힘든 사회적 재난이 고용보험 취약계층에 미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단기간에 설계된 사업이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사업 설계·집행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① 동 사업에

1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에 신규대상자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11월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12)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해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9.8. 국무회의 의결)에 따르면 특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며, 특고 중 일부 직종만 가입대상이 될 것인바, 현실적으로 동 사업의 정책대상이 2021년 내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른 1차 지원금과 이번 추경안에 신규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조의 정립, ②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매출 요건 및 소득·매출 감소 요건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마련, ③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¹³⁾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원자의 생계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여부 검토 및 지급 기간 다양화 방안¹⁴⁾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원 대상 요건 및 지원액, 전달체계 등 동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13) 1·2차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1차 지원금만 수령하거나 2차 지원금만 수령하는 사람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14)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동 사업의 목적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고용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최대한 안정적으로 소득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칙적으로 여러 달에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급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위원회별 분석]」, p.613.).

나. 저소득 미취업 청년 중심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¹⁾은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34세)에게 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되었다. 동 사업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1,024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본예산	2020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131,940	164,198	164,198	164,198	164,198	266,679	102,481	62.4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0	0	0	0	0	102,481	102,481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만 18~34세 청년으로서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²⁾, 취업성공패키지³⁾)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및 신규로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중에서 대상자를 심사·선발하여 총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디지털 훈련을 연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목적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청년이 주로 참여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⁵⁾ 중 코로나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1의 내역사업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하며,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청년,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1단계)',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9등 경기침체로 미취업한 청년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기존에 상
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근거]

예산 규모	목표 지원 인원	산출 방식
1,025억원	20만명	1,000억원(20만명 × 50만원) + 24억원(운영비) + 0.5억원(전산망구축비)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청년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성격 등이 유사한 사업의 참여자 및 지원이 반드시 필
요한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
속히 마련하여 국회 심의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현재 사업 설계 방향을 토
대로 검토하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자만으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하는 경우 두 사업과 목적 및 성격이 유사한 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각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수당 유사사업에 대하여 고용노
동부는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 참여자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양자의 동시 참여를 금지하고, 순차 참여의 경우
에도 재참여 제한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⁶⁾⁷⁾

그런데, 다수의 청년수당 유사사업이 소득기준을 두고 있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그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바 참여 청년에게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각 사업 참여 청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겪는 취업 애로는 큰 차이가 없을

4)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선발대상 청년 중에서도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 점수가 달라진다.

5)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의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고, 가구소
득이 그 이상인 청년의 경우 II 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6)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2020.1.

7)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이와 유사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사업 수혜자에 대하여 수혜기간 종료 또는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2020.1., p.45.).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자와 청년수당 유사사업 참여자간 지원의 필요성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⁸⁾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2020.1월 기준)]

사업명(자치단체)	2020년 계획
청년활동지원사업(서울)	19~34세/중위소득150%이하/50만원×6개월/30,000명
청년기본소득(경기)	24세/최대 100만원/150,000명
청년취업 희망카드(대전)	18~34세/중위소득150%미만/50만원×6개월/2,500명
청년구직활동비(부산)	18~34세/중위소득150%이하/1인당 300만원/2,000명
구직활동수당(강원)	18~34세/중위소득150%이하/50만원×6개월/2,000명
광주청년드림수당(광주)	19~34세/중위소득150%이하/50만원×5개월/1,120명
청년실험! 프로젝트(전주)	18~39세/중위소득150%이하/50만원×3개월/300명
청년자기계발비(제주)	19~34세/중위소득120%이하/50만원×6개월/400명
청년구직활동수당(전남)	18~34세/중위소득150%미만/50만원×6개월/850명
청년취업활동수당(전남 영광)	18~45세/중위소득150%미만/50만원×6개월/50명
청년구직활동수당(경남)	18~34세/중위소득150%이하/50만원×4개월/3,000명
대구형 청년수당(대구)	상당연결(30만원×1회), 진로탐색, 일경험(150만원×1회) 19~34세/중위소득150%이하/1,466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울산)	18~34세/중위소득150%이하/30만원×6개월/160명
드림 체크카드(인천)	19~39세/중위소득150%미만/50만원×6개월/320명
청년취업드림카드(전북 익산)	18~39세/30만원×6개월/200명
청년자립수당지원(전북 군산)	18~34세/중위소득120%이하/50만원×6개월/100명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 (강원 양구)	19~34세/30만원×3개월/30명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실비지원
청소년성장지원금(울산 울주)	18세/최대 200만원/2,100명(잠정)
구직지원금지원사업(전북 고창)	고교졸업 후 2년 이상/18~34세/중위소득150%이하/50만원×2개월/150명(잠정)
청년구직수당지원(인천 강화)	18~39세/중위소득150%이하/50만원×6개월/50명

주: 1. 청년기본소득(경기), 대구형 청년수당(대구),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강원 양구), 청소년성장지원금(울산 울주), 구직지원금지원사업(전북 고창)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졸업 후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함(다만, 전북 고창의 구직지원금지원사업의 경우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

2.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8)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참여 청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0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2020.1.)에 따르면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수혜자는 수혜기간 종료 또는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소득기준,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를 이유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유사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청년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사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청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함으로써 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상기 문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I 유형 참여 청년과 달리, II 유형은 가구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청년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위해 특별구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청년층 외에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청년층도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사업 설계 방향의 경우 유사한 목적과 성격의 사업에 참여한 유사한 상황의 청년 중 일부가 지원에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선별된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청년들이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성격 등이 유사한 사업의 참여자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심의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목표 인원 달성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¹⁾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현재까지 예비비(529억원)로 편성·운영되었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6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결산	2020 본예산	2020추경				증 감	
			제1회	제2회	제3회 (A)	제4회(안) (B)	(B-A)	(B-A)/A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0	0	0	0	0	56,250	56,25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이다.²⁾ 연간 최장 20일³⁾에 대하여 일단위로 나누어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39-302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⁴⁾의 돌봄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2.28.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4. 예비비를 배정받아 동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법정 휴가사용일수 10일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였으나,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 돌봄 수요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4.9.) 이를 위해 예비비 316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후 근거법령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9.8.)되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돌봄비용 지원 최대 기간도 기존의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었다⁵⁾.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3)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자녀(만 18세 이하)의 휴원·휴교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등의 경우에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① ~ ④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②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5) 다만,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원 최대 기간은 이전과 동일한 10일이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운영 경과]

시점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일수	가족돌봄비용 연간 최대 지원 일수	재원
2020.3.4.	10일	5일	예비비 213억원 편성
2020.4.17	10일	10일	예비비 316억원 추가
2020.9.11.	20일	15일 ¹⁾	제4회 추경안 563억원 증액

주: 1) 대규모기업·공공기관 근로자의 연간 최대 지원 일수는 10일임

1.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일수 및 가족돌봄비용 연간 최대 지원 일수는 근로자 1인당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월말 기준 예산현액 529억 3,600만원 중 407억 2,100만원(76.9%)이 집행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2.5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56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가족돌봄비용을 지급 받은 적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⁶⁾ 소속 근로자 7.5만명에 대하여 5일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 5만명에 대하여 15일을 지원(단, 대규모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10일 한도 지원)할 계획이다.

- 6) 우선지원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의미하며, 대규모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별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C	500명 이하
광업	B	300명 이하
건설업	F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주: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예산 규모	목표 인원	산출 방식
563억원	12.5만명	$7.5\text{만명} \times 5\text{만원} \times 5\text{일} + 5\text{만명} \times 5\text{만원} \times 15\text{일}$ · 기존 7.5만명: 5일 추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한정) · 신규 5만명: 15일 지원(대규모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10일 한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인원 및 목표 기간을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예산안 산출방식은 3~8월 지원 근로자 총 인원(약 12만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7.5만명이 최대 지원 기간 5일을 모두 사용하고, 신규 지원자 5만명이 최대 지원기간 15일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동 사업의 8월 말 기준 집행률은 76.9%이고, 사업 시행 후 6개월간(3~8월)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34만 1천원으로서 평균 지원 기간은 약 7일인바, 기존 최대 지원 기간(10일)의 70% 수준이다. 또한, 3~8월 간 월별 지급액 집행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등교 중단 등으로 4월 월별 지급 최대치인 21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월별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접수건수	42,887	77,313	37,988	15,485	5,848	3,980
지급건수	8,225	83,067	45,153	16,693	5,999	3,189
지급액	1,872	21,011	11,865	3,967	1,316	672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른 개학 연기 등에 따라 그 수요가 변동하여 적절한 수요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인원 및 목표 기간을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집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이 현 중 예산분석총괄과장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 석 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 은 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윤 여 문 홍 선 기 이 강 구 김 유 진
이 광 근 이 은 미 김 윤 수 박 은 형
유 승 선 황 종 료 오 현 희

지 원 | 황 아 람 예산분석관보
인 정 은 행정실무원
홍 수 현 자료분석지원요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0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326-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